

정책보고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규제순응도 실태

김미숙 서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간접흡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도 간접흡연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이 발생된다. 부모가 흡연을 하면 흡연자의 어린 자녀에게 폐렴과 기관지염 및 중이염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또한 흡연하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생률이 30%가 더 높다. 이러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1868년 영국에서는 철도법에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연담배 의무조항을 통과시켰고, 미국에서는 1993년 간접흡연을 환경성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이 후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에서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다.

흡연지역 제한 정책은 실질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의 흡연을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물 내 완전금연을 채택한 사업장에서는 니코틴 농도는, 흡연이 허용된 사무실에서의 니코틴 농도의 $\frac{1}{2}$ 이하로 감소되어, 실질적으로 비흡연자를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가 흡연자의 흡연을 저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경우 직장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를 통하여 담배 소비량이 4~10%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흡연구역을 규제하는 건물의 직장인에서 흡연구역규제 후 흡연량이 감소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흡연 구역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복합건축물, 대형공연장, 학원,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초·중·고 학교의 교사(校舍), 실내 체육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목욕장 등 11개 공공시설에서의 금연 및 흡연구역을 구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흡연구역 제한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 해당 공공시설 관리자, 집행공무원의 인지도, 수용도 및 실질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흡연 규제정책의 효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은 체계적 추출법에 의하여 선발된 일반국민 403명, 시설관리자 148명, 집행공무원 70명 등 총 621명이며, 2002년 5월 31일~2002년 6월 7일까지 총 5일간 전화 조사를 통하여 간접흡연방지 규제 인지, 규제 인정, 규제 준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책임연구원의 책임하에 서미경 연구위원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본 서가 흡연실태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계전문가, 금연정책을 입안하는 정책결정자 및 기타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연구진들은 조사에 응해주신 일반국민, 공공시설 관리자, 담당 공무원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손일용 사무관, 윤재규 담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본고를 검독하고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본 연구원의 백화종 연구위원과 최은진 책임연구원께도 감사를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고는 연구진의 의견이지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2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박 순 일

목 차

요 약	9
I. 서론	17
1. 연구목적	20
2. 연구방법	21
II. 공공시설에서의 금연 및 흡연구역 준수 조사 결과	28
1. 공공시설에서의 흡연 및 금연구역 구분	28
2. 공공시설에서의 절대 금연구역 지정	37
3.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46
4.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52
III. 피규제집단의 금연규제에 대한 태도	58
1. 일반국민의 흡연 제한 규제에 대한 태도	58
2. 시설관리자의 흡연 제한 규제에 대한 태도	65
IV. 결론 및 제언	74
참고문헌	85
부 록	87

표 목 차

〈표 1- 1〉 표본추출	22
〈표 1- 2〉 집행공무원	22
〈표 1- 3〉 시설관리자	23
〈표 1- 4〉 일반국민	24
〈표 1- 5〉 조사설문지	25
〈표 1- 6〉 표본크기	26
〈표 2- 1〉 규제 인지도	29
〈표 2- 2〉 규제 이해도	29
〈표 2- 3〉 규제필요성	31
〈표 2- 4〉 규제 준수 적절성	32
〈표 2- 5〉 국민건강 기여도	33
〈표 2- 6〉 규제 준수율	33
〈표 2- 7〉 규제 준수 감시가능 여부	35
〈표 2- 8〉 벌칙부과의 적절성	35
〈표 2- 9〉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 구역구분	36
〈표 2-10〉 규제 인지도	38
〈표 2-11〉 규제 이해도	39
〈표 2-12〉 규제 필요성	40
〈표 2-13〉 규제 준수 적절성	41
〈표 2-14〉 규제의 국민건강기여도	41
〈표 2-15〉 규제 준수율	42
〈표 2-16〉 규제 준수 감시가능 여부	43
〈표 2-17〉 벌칙부과의 적절성	44
〈표 2-18〉 공공시설에서의 절대 금연구역 지정	45

〈표 2-19〉	규제 인지도	47
〈표 2-20〉	규제 이해도	47
〈표 2-21〉	규제 필요성	48
〈표 2-22〉	규제 준수 적절성	48
〈표 2-23〉	국민건강 기여도	49
〈표 2-24〉	규제 준수율	49
〈표 2-25〉	규제 준수감시가능여부	50
〈표 2-26〉	벌칙부과의 적절성	50
〈표 2-27〉	요약	52
〈표 2-28〉	인지도	53
〈표 2-29〉	필요성	53
〈표 2-30〉	규제 준수적절성	54
〈표 2-31〉	국민건강 기여도	54
〈표 2-32〉	규제 준수율	55
〈표 2-33〉	준수 감시가능 여부	55
〈표 2-34〉	벌칙부과의 적절성	56
〈표 2-35〉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56
〈표 3- 1〉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 구분에 대한 필요성, 인지도, 준수율간의 관계	58
〈표 3- 2〉	시설별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구분	61
〈표 3- 3〉	일반국민의 공공시설의 종류별 흡연/금연구역 구분에 대한 준수적절성, 국민건강기여도 간의 관계	64
〈표 3- 4〉	4종 규제의 준수적절성, 국민건강 기여도	66
〈표 3- 5〉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구분 준수율, 인지도, 필요성	68
〈표 3- 6〉	공공시설에서의 절대금연구역지정	71
〈표 4- 1〉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 구역 구분 결과 요약표	76
〈표 4- 2〉	절대금연구역의 지정 결과 요약	77
〈표 4- 3〉	흡연구역에 스티커, 칸막이, 환기시설 시설설치 결과 요약	79
〈표 4- 4〉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 결과 요약	80

도 목 차

[도 1- 1]	연구의 목적	21
[도 1- 2]	연구모형	27
[도 3- 1]	2종 규제 인지도 /준수율 - 일반국민	59
[도 3- 2]	규제 필요성 /준수율 - 일반국민	60
[도 3- 3]	시설별 흡연/금연구역 구분 규제 인지도/준수율 - 일반국민	62
[도 3- 4]	시설별 흡연/금연구역 구분 규제 필요도/준수율 - 일반국민	63
[도 3- 5]	규제 준수적절성 /준수율 - 일반국민	64
[도 3- 6]	국민건강 기여도/준수율 - 일반국민	65
[도 3- 7]	4종 규제 준수적절성 /준수율 - 시설관리자	67
[도 3- 8]	4종 규제 국민건강 기여도/준수율 - 시설관리자	67
[도 3- 9]	흡연/금연구역 구분 규제 인지도/준수율 - 시설관리자	69
[도 3-10]	흡연/금연구역 구분 규제 필요도/준수율 - 시설관리자	70
[도 3-10]	시설별 절대금연구역 지정 규제 인지도/준수율 - 시설관리자	72
[도 3-11]	시설별 절대금연구역 지정 규제 필요도/준수율 - 시설관리자	73

요 약

- 조사목적: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4종의 규제인 흡연 및 금연 구역지정 규제(규제1), 절대금연구역 지정규제(규제2),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규제(규제3),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 규제(규제4)가 어느 정도 인지되고, 준수되고 있는지를 피규제집단인 일반국민과 시설관리자, 그리고 이를 집행 및 단속을 하는 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아울러 규제의 효과성 등도 평가하여 규제의 준수율을 제고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방법: 체계적 추출법(Systematic Sampling)에 의한 전화조사
- 조사대상: 일반국민 403명, 시설관리자 148명, 집행공무원 70명(총 621명)
- 조사기간: 2002년 5월 31일~2002년 6월 7일(5일간)
- 조사내용:
 - (1) 규제 인지: 규제 인지도, 규제 이해도, 내용의 명확성
 - (2) 규제 인정: 규제 필요성, 규제 준수 적절성, 국민건강 기여도
 - (3) 규제 준수: 규제 준수율, 준수 감시가능 여부, 벌칙부과의 적절성

<규제 1> 총 평

-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에 대해 집행공무원과 시설관리자가 대부분 알고 있었으나, 일반국민은 이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음. 시설별

로는 관광숙박업소와 목욕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이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함.

-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에 90%를 훨씬 상회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규제 이해도와 마찬가지로 관광숙박업소 및 목욕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 규제 준수적절성에 대한 항목에서는 일반국민과 시설관리자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우세하였으나 집행공무원은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집행공무원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함.
- ┌ 국민건강 기여도에 대해서도 세 집단에서 일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집행공무원 88.6%, 일반국민 94.3%, 시설관리자 95.3%로 높게 나타났음.
- 규제 준수율이 집행공무원은 대체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반국민과 시설관리자는 이에 비해 준수율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었음.
- ┌ 규제 준수 감시가능여부에 대해 집행공무원, 일반국민, 시설관리자 모두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 벌칙부과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현재수준이 적당하다가 가장 높았으나, 집행공무원과 일반국민은 강화해야한다고 38.6%, 37.0%로 높은 응답률 등 엇갈린 응답을 보였음.

〈규제 2〉 총 평

- 규제 인지: 공공시설에서의 절대금연 구역 지정에 대한 규제인지는 집행공무원, 시설관리자 모두 높게 나타났음.

- 규제 인정: 집행공무원, 시설관리자 모두 이 규제가 필요하며, 규제 준수적절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편이라고 집행공무원(70%)과 시설관리자(60.8%)가 응답하였고, 국민건강 기여도 역시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하였음.
- 규제 준수: 규제 준수율은 건물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 80%이상 나타났으나, 준수감시 가능여부에 관해서는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집행공무원의 77.1%, 시설관리자의 54.7%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이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 벌칙부과의 적절성은 집행공무원은 강화(44.3%)하거나 현재수준(32.9%)으로 해야 하고, 시설관리자는 현재수준(49.3%)을 유지하거나 완화(33.1%) 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와 서로 엇갈리고 있었음.

〈규제 3〉 총 평

- 금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의 규제인지는 인지도 와 이해도 모두 긍정적인 응답을 보임.
- ┌ 규제 필요성은 집행공무원(80%)과 시설관리자(91.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규제 준수적절성 역시 대체로 적절한 편이라고 집행공무원의 52.9%, 시설관리자의 56.8%가 응답하였음.
- ┌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항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집행공무원 95.7%, 시설관리자 93.2% 모두 과반수가 넘는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음.
- 규제준수 항목에서는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지키지 않음이 나타났고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함.

- ┌ 규제를 집행공무원과 시설관리자의 77.1%, 64.9%가 준수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흡연구역 필요시설인 스티커만 집행공무원(94.3%), 시설관리자(91.2%)가 준수한다고 대답했을 뿐, 칸막이는 집행공무원(74.3%)이 준수하지 않았고, 환기시설 역시 집행공무원(52.9%), 시설관리자(79.7%) 모두 과반수만 약간 넘는 수준으로 준수하고 있어 흡연구역필요시설을 단지 스티커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준수 감시 가능여부는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집행공무원(77.1%)과 시설관리자(48.6%)가 응답하였고, 벌칙부과의 적절성은 집행공무원은 현재수준이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6%이고 시설관리자는 현재수준이나 완화해야한다는 것이 89.1%로 응답하여 엇갈린 반응을 보임.

〈규제 4〉 총 평

-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에 대해 집행공무원과 일반국민, 시설관리자 대다수가 알고 있었으며, 금연구역에서 금연 의무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이 동의하였음.
- 규제 준수적절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집행공무원이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응답도 24.3%로 나타나 일선에서 규제하는 집행공무원들이 수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규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음.
- 공공시설 금연구역에서 금연의무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매우 우세하였음.
- 공공시설에서 금연 의무에 대해 금연한다는 응답이 집행공무원, 일반국민, 시설관리자 모두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낮은 비율을 나타냈음. 이 규제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준수감시가능여부에서는 집행공무원은 일반국민과 시설관리자에 비해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음. 집행공무원의 감시가능성의 현실화를 맞추기 위하여 집행력 및 법의 재정비가 필요함.

〈Portfolio〉 총 평

일반국민 대상

- 일반국민 대상으로 규제의 인지도, 필요성, 규제 준수적절성, 국민건강 기여도를 Portfolio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되는 시설은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교통시설, 목욕장이었음. 이 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규제에 대한 홍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홍보를 통해서 규제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이 제고될 때, 규제에 대한 준수율이 상승할 수 있음.
- 반면 학원과 대규모 점포는 규제의 필요성은 높았으나, 준수율은 낮아, 이 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줄일 수 있도록 단속이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
- 흡연/금연구역 구분 규제와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규제의 분석결과, 후자의 경우 인지도, 필요성, 규제 준수적절성, 국민건강 기여도 등은 평균이상이나 준수율이 낮으므로 이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서 규제의 준수율을 제고해야 함.

시설관리자 대상

- 절대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시설관리자 대상 Portfolio 분석 결과, 학원, 관광숙박업소, 목욕장의 규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낮은

준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규제 준수도를 높이기 위해서 ‘흡연/금연구역 구분 규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대규모 점포는 규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준수율은 낮아 이 시설에 대한 단속의 강화, 규제의 목적부합성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규제는 시설관리자가 이에 대한 규제 준수 적절성이나 국민건강 기여도의 판단에서 평균 이하의 평가를 하였고, 이러한 낮은 평가가 낮은 준수율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규제가 준수하기에 적절하고 국민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함.
- 공공시설의 흡연/금연구역 구분(규제1), 절대금연구역의 지정(규제2)에 대한 준수율이 90% 정도의 높은 비율을 보임. 그러나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규제한 환기시설의 필요시설설치(규제3)에서는 실천율이 50% 정도로 낮게 나타남. 그리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규제4)의 준수율은 50% 미만으로 4개의 규제 중 가장 낮음.
- 공공시설의 흡연/금연구역 구분(규제1), 절대금연구역의 지정(규제2), 흡연구역에 스티커, 칸막이, 환기시설의 필요시설설치(규제3)는 시설관리자의 의무사항이며,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규제4)는 일반국민의 의무사항임을 감안 할 때, 시설관리자 보다는 일반국민의 규제준수율이 낮은 편임.
- 준수율은 시설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목욕장, 관광숙박업소, 학원, 교통시설, 대규모점포(지하상가)에서의 규제 준수비율이 다른 시설에 비해 낮음.
- 4가지 규제는 규제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국민건강의 기여도는 모두 높게 나타남. 이는 국민들로부터 해당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는 것으로, 해당 규제를 존속시키고, 강화하여야 함을 뒷받침하는 자료임.
- 그러나 해당 규제의 준수율은 인지도, 필요성, 국민건강의 기여도 보다 낮는데, 이렇게 준수율이 낮은 원인으로 4가지 규제에 대하여 공통적으

로 해당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해당 규제의 준수의 어려움(규제 준수 적절성)과, 현재의 행정력으로 규제 준수 감시가 불가능함(규제준수감시가능)을 꼽을 수 있음. 특히 현재의 행정력으로 규제준수 감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국민, 시설관리자, 집행공무원에게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임.

- 또한 상대적으로 규제준수율이 낮은 관광숙박업소, 목욕장, 학원, 대규모 점포(지하상가), 교통관련시설의 공공시설의 흡연/금연구역 구분(규제1)과 절대금연구역의 지정(규제2)에 대한 낮은 인지도(규제인지도), 환기시설의 필요시설설치(규제3)에 대한 낮은 인지도(규제인지도)와 환기시설의 필요시설설치(규제3)가 국민건강에 대한 기여도(국민건강기여도)가 낮은 사항임.
- 따라서 4가지 규제는 지속, 강화되어야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하여

□ 규제별 지원책

- ┃ 1. 공공시설의 흡연/금연구역 구분(규제1)은 4가지 규제 중 비교적 준수율이 높은 규제임. 그러나 시설별로 규제준수율이 낮은 시설인 목욕장, 관광숙박업소 등 상대적으로 규제준수율이 낮은 시설에 대한 해당규제의 존재여부와 필요성, 국민건강의 기여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을 병행하여야 함. 행정력의 강화를 통한 준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 2. 절대금연구역의 지정(규제2)은 행정력의 강화를 통한 준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특히 목욕장, 관광숙박업소 등 상대적으로 규제준수율이 낮은 시설에 대한 해당규제의 존재여부와 필요성, 국민건강의 기여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을 병행하여야 함.
- ┃ 3. 환기시설의 필요시설설치(규제3)는 해당규제의 존재여부와 필요성, 국민건강의 기여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함. 또한 시설관리자들이 필요시설을 특히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

술적인 지원 또는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또한 규제준수 감시 강화를 위한 행정력의 개편이 필요함.

- ┌ 4.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규제4)는 일반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시를 하도록 행정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감시를 강화하여야 함.

□ 요약하면 다음의 3가지 지원책이 필요함.

- ┌ 1.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조직, 인원, 재정 등의 정비가 필요함. 위반시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하여도 무방함.
- ┌ 2. 전반적인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홍보의 강화가 필요함. 교육홍보는 일반국민, 시설관리자, 집행공무원의 순으로 필요함. 내용별로는 흡연/금연구역 준수율이 낮은 목욕장, 관광숙박업소, 학원, 교통시설, 대규모점포(지하상가)에서의 금연/흡연구역의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흡연구역에서의 필요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가장 준수율이 낮은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규제4)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가 진행되어야 함.
- ┌ 3. 시설관리자들이 흡연구역에 스티커, 칸막이, 환기시설 특히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

I. 서론

간접흡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는 것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담배에서 배출되는 독성물질을 흡입하게 되어, 흡연을 하지 않고도 흡연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미국에서는 이미 1993년 간접흡연을 환경성 발암물질로 규정(USEPA, 1993)하였고, 세계 각 국에서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인식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흡연구역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담배연기는 담배의 끝에서 직접 나오는 부류연과 흡연자가 들이마셨다가 다시 내뿜는 주류연으로 구분된다. 간접흡연자가 들이마시는 연기는 부류연이 더 많으며, 부류연이 주류연 보다 더 독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환경성 담배 연기의 유해성분 양의 분포상태는 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 모두 주류연 보다 부류연에 1.2~231배 정도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부류연과 주류연의 독성 함유물질은 중금속의 경우 주류연에서는 $0.03 \sim 1.5 \mu\text{g/g}$ cigar et te smoked, 부류연에서는 $0.2 \sim 43 \mu\text{g/g}$ cigar et te smoked 로 주류연에 비해 부류연에 훨씬 많은 양이 분포한다. 특히 니코틴은 주류연에 비하여 부류연에서 약 231배 정도 높게 분포하여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들이마시는 부류연에 담배독성 물질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조성일, 2002).

이러한 부류연에 가장 많이 노출된 대상자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흡연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로, 이들의 호흡성분진(Respirable Suspended Particle, RSp) 중위값은 $60 \mu\text{g}/\text{m}^3$ 이며, ETS입자는 $16 \mu\text{g}/\text{m}^3$ 니코틴은 $1.6 \mu\text{g}/\text{m}^3$ (Phillips K., et al. 1998)로 일반적인 비흡연자들 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간접흡연 규제정책으로 건물내 완전금연을 채택한 사업장에서는 니코틴 농도가 $1 \mu\text{g}/\text{m}^3$ 이하로 검출되고, 흡연이 허용된 사무실에서는 $2 \sim 6 \mu\text{g}/\text{m}^3$ 의 니코틴이 검출되어(Hammond, 1999), 흡연장소 규제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러나 흡연구역을 제한하더라도 이 제한을 잘 지키지 않거나, 흡연구역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고 화장실, 복도 등 열린 공간일 경우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니코틴 함유량의 차이가 적다(백남원, 2002).¹⁾

담배 속에는 적어도 20여 종의 A급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이러한 발암물질들의 축적으로 담배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우면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암의 발생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또한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우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하며, 20~30년간 담배를 계속 피우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폐기종에 걸리게 된다. 위와 같은 상태들이 지속되면 최종적으로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 흡연자의 폐암사망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6~9배 높다. 관상동맥질환은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하여 60~70% 정도 위험도가 증가된다. 흡연이 심장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이유는, 심근에 필요한 산소 소비량에 비하여 심근으로 보내는 산소공급량이 줄어들어 심근에 산소부족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심근허혈상태가 되고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직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간접흡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폐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황보빈, 2002). 전반적으로 폐기능 감소의 연관성은 직접 흡연에서 대체로 분명하였으나 간접흡연과의 연관성은 보다 약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소변 코티닌에 의해 측정된 간접흡연은 비교적 일정한 연관성을 보여주어서, 간접흡연이 폐기능 저하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소변 코티닌 값이 증가할수록 가장 연관성이 큰 폐기능은 $r F_{EVI} / F_{VC}$ 값의 감소이다. 이는 직접 및 간접흡연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간접흡연의 경우 효과가 비교적 적다(조성일, 2002).

부모가 흡연을 하면 흡연자의 어린 자녀에게 폐렴과 기관지염 및 중이염이 발생한다. 담배를 피우는 부모를 가진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의 상기도염 감염률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는 집의 어린이는 급성 호흡기질환 감염률이 5.7배나 높다. 그 이외에 천식, 기침, 중이염 등의 발현을

1) 일반적으로 흡연자의 담배독성 함유량이 비흡연자의 담배 독성 함유량 보다 적다. 한 예로 니코틴의 경우 흡연자의 니코틴 함유량은 $5.22\mu\text{g}/\text{m}^3$ 이고 비흡연자의 니코틴 함유량은 $0.59\mu\text{g}/\text{m}^3$ 로 나타남(백남원, 흡연노출 평가를 이용한 금연정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2).

도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어린이에게서 6배나 높으며, 폐기능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NRC, 1986).

흡연하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폐암 발생률이 30%가 더 높다. 전국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 자료 중에서 40세 이상 부부(265,052쌍)를 대상으로 1994년 남편의 흡연력을 조사하고, 1995~1997년 3년간 부인의 폐암 입원력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112명의 부인에게서 폐암이 발생하여, 10만명당 폐암발생률 13.8을 나타내었다(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자료, 1993~1997).

흡연하지 않는 남편의 부인과 비교하여, 현재 흡연하는 남편의 부인은 나이, 사회적 지위, 거주지, 남편의 채소섭취량, 남편의 직업변수들이 모두 같다고 할 때, 폐암으로 입원할 확률이 1.9배 높았으며 특히 흡연하는 남편과 30년 이상 같이 지낸 부인의 경우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흡연하지 않는 남편의 부인보다 3.1배나 높았다. 이러한 위험도는 남편과 부인의 연령, 사회경제적 상태, 음주여부와 관계없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1996년 한국인 여성 2,277명이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만일 남편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더라면 약 800여 명의 여성폐암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Jee SH et al. 1999).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 치료에 소요된 입원 및 외래 진료비, 교통비, 보호자비, 작업손실비, 조기사망비는 1721억원(흡연자를 남편으로 둔 35~64세의 여성)으로 추계된다(김한중 외, 2001).

1868년 영국에서는 철도법에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연담배를 의무로 하는 조항을 통과시킨 이래,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발표됨에 따라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에서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흡연지역 제한 정책은 실질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흡연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흡연율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0개국의 흡연율과 흡연규제의 상관관계 연구결과에서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가 15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저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애숙 외, 2001). 미국의 경우 직장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를 통하여 담배 소비량이 4~10% 감소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The World Bank 1999),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흡연구역을 규제하는 건물의 직장인에서 흡연구역규제 후 흡연량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57.5%이며, 반대로 직장에서 흡연구역을 철폐 할 경우 다시 흡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66.9%로(김한중, 2000), 흡연 장소 규제는 흡연자의 흡연을 저하의 효과까지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고 흡연구역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흡연구역규제정책이 실질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흡연 규제정책의 효율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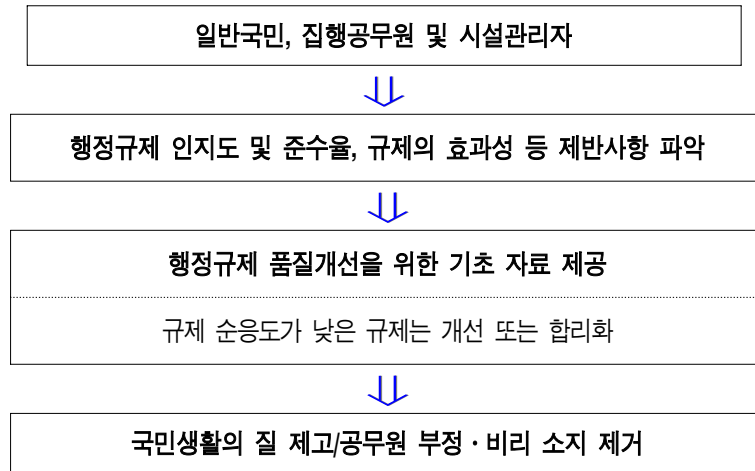
1. 연구목적

국민건강증진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1999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공공시설에서의 절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구역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와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분리되는 동시에 흡연구역의 환기가 되어 흡연구역의 공기정화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이러한 흡연구역지정 및 금연구역지정 규제를 일반국민과 해당시설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의 흡연구역 규제에 대한 이해 정도, 준수정도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금연정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본 조사의 목적이다. 세부적으로 첫째, 해당시설관리자·집행공무원·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규제가 어느 정도 인지되고, 준수되고 있으며, 시정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인지를 조사하여, 본 규제에 대한 준용도를 점검하고 규제의 내용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금연구역에 대한 규제 인지도 및 준수율, 규제의 효과성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평가·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비현실적이면서 준수율이 낮은 규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합리화함으로써 행정규제 품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

고, 아울러 일선 단속 공무원의 보다 현실적인 감시 체제 마련과 부정, 비리 소지를 제거한다.

[도 1-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가. 표본의 선정

조사대상은 일반국민,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시설의 장, 금연 및 흡연구역 규제업무 담당공무원이다. 일반국민은 층화추출법에 의하여 대상을 선정하였고, 시설관리자 및 집행공무원은 유의적추출법에 의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 1-1〉 표본추출

구 분	내 용
모 집 단	해당규제 관련자(시설관리자, 집행공무원) 및 일반국민
표본크기	621명(유효표본)
표본구성	구체적인 대상별 표본구성은 아래 표 참조
표본추출법	층화추출법(일반국민) / 유의적 추출법(시설관리자 및 집행공무원)
조사방법	전화조사
조사시기	2002년 5월 31일 ~ 2002년 6월 7일(5일간)

추출된 표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집행공무원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특별시와 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최종 표본은 총 70명이며 서울 25명, 부산 16명, 인천 10명의 순으로 많다.

〈표 1-2〉 집행공무원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70	100.0
지역별	서울	25	35.7
	부산	16	22.9
	대구	6	8.6
	인천	10	14.3
	광주	4	5.7
	대전	4	5.7
	울산	5	7.1

시설관리자는 총 148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25명, 부산 26명, 대구 25명의 순이며. 시설별로는 대형건물 23, 의료기관 18, 공연장 10의 순이다.

〈표 1-3〉 시설관리자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48	100.0
지역별	서울	25	16.9
	부산	26	17.6
	대구	25	16.9
	인천	19	12.8
	광주	19	12.8
	대전	19	12.8
	울산	15	10.1
시설유형	대형건물	23	15.5
	공연장	10	6.8
	학원	10	6.8
	대규모 점포	19	12.8
	관광숙박업소	9	6.11
	학교	20	13.5
	실내체육시설	9	6.1
	의료기관	18	12.2
	사회복지시설	10	6.8
	교통관련시설	10	6.8
	목욕장	10	6.8
성별	남자	123	83.1
	여자	25	16.9
연령별	20 ~ 29세	20	13.5
	30 ~ 39세	56	37.8
	40 ~ 49세	52	35.1
	50 ~ 59세	17	11.5
	60세 이상	3	2.0
흡연여부	흡연	66	44.6
	금연	82	55.4

일반국민은 총 403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86명, 부산 69명, 대구43명의 순이다. 남자 201명, 여자 202명의 분포를 보이고, 연령별로는 30~39세 127명, 20~29세 110명의 분포를 보인다.

〈표 1-4〉 일반국민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403	100.0
지역별	서울	186	46.2
	부산	69	17.1
	대구	43	10.7
	인천	43	10.7
	광주	23	5.7
	대전	22	5.5
	울산	17	4.2
성별	남자	201	49.9
	여자	202	50.1
연령별	20 ~ 29세	110	27.3
	30 ~ 39세	127	31.5
	40 ~ 49세	86	21.3
	50 ~ 59세	40	9.9
	60세 이상	40	9.9
교육수준별	무학	6	1.5
	초등학교 졸	17	4.2
	중졸	32	7.9
	고졸	143	35.5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이상	205	50.9
직업별	전문직	9	2.2
	사무직	73	18.1
	노동근로직	15	3.7
	자영업	72	17.9
	판매/서비스직	34	8.4
	농어업	69	1.5
	무직	36	8.9
	주부	100	24.8
	학생	44	10.9
	기타	14	3.5
소득수준별	50만원 미만	10	2.5
	50 ~ 100만원 미만	23	5.7
	100 ~ 150만원 미만	45	11.2
	150 ~ 200만원 미만	83	20.6
	200 ~ 300만원 미만	117	29.0
	300만원 이상	125	31.0

나. 조사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현행법에 제정된 흡연구역의 제한과 관련된 4가지 문항인 공공시설에서의 흡연 및 금연구역 구분, 공공시설에서의 절대 금연구역 지정, 흡연구역의 스티커, 칸막이, 환기시설 등 필요시설 설치,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를 각각의 사항에 대한 규제 존재여부 인지도, 규제 내용에 대한 이해도,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준수 적절성, 규제의 국민건강 기여도, 규제 준수율 및 미준수 이유, 규제 준수 감시가능 여부, 규제 위반시 벌칙부과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²⁾

〈표 1-5〉 조사설문지

흡연 규제	설문내용	관련법
공공시설에서의 흡연/ 금연구역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에서의 흡연 및 금연구역 구분에 대한 인지, 수용 및 준수여부 - 해당공공시설에 대한 인지, 수용 및 준수여부: 복합건축물, 대단위 공연장, 학원,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학교의 교사(校舍), 실내 체육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및 차량, 목욕장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지, 수용 및 준수 여부 	국민건강증진법9조④항,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6조
공공시설에서의 절대 금연구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공공시설에 대한 절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인지, 수용 및 준수여부 - 해당공공시설에 대한 인지, 수용 및 준수여부: 해당 공공시설의 승강기, 지하상가 중 상품판매장소 - 의료기관의 진료실, 입원실,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곳, 차량안, 지하철 및 지하철의 역사안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지, 수용 및 준수 여부 	국민건강증진법9조④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7조

2) 상세한 설문 내용은 부록 2 참조(본 보고서 94쪽 ~ 121쪽). 상세한 법 항목은 부록 3 참조(본 보고서 122쪽 ~ 126쪽)

〈표 1-5〉 계속

흡연 규제	설문내용	관련법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 스티커, 칸막이, 공기정화시설설치에 대한 인지, 수용 및 준수 여부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지, 수용 및 준수 여부	국민건강증진법9조4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3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 금연구역에서 금연실천 의무에 대한 인지, 수용 및 준수 여부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부과에 대한 인지, 수용 및 준수 여부	국민건강증진법9조5항 경범죄처벌법

공공시설에서의 흡연 및 금연구역의 구분과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에 대한 설문은 일반국민, 시설장,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공공시설에서의 절대금연구역의 지정, 흡연구역에 필요한 스티커, 칸막이 등의 시설 설치 관련 설문은 시설장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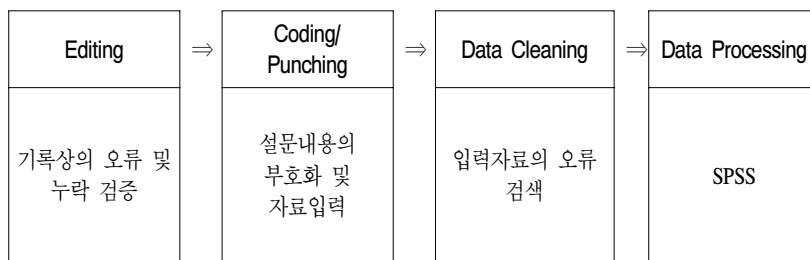
〈표 1-6〉 표본크기

규제 내용	설문 대상	표본크기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 구분	집행공무원	70
	일반국민	403
	시설관리자	148
공공시설에서의 절대 금연구역 지정	집행공무원	70
	시설관리자	148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집행공무원	70
	시설관리자	148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집행공무원	70
	일반국민	403
	시설관리자	148

조사는 전화조사로 진행되었다. 전화조사원은 전화조사 경력이 있는 전문면접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전교육과 전화조사 연습을 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Coding, Punching, Editing 과정을 거쳐 SPSS Program으로 전산 처리하였다. 조사결과는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으며, 필요시 문항과 문항간의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을 하였다.

[도 1-2] 연구모형



Ⅱ. 공공시설에서의 금연 및 흡연구역 준수 조사 결과

1. 공공시설에서의 흡연 및 금연구역 구분

국민건강증진법 9조³⁾ 및 동법 시행규칙 6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근거한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 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버스정류장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의 11개 공공시설에서의 금연 및 흡연구역의 구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⁴⁾ 이에 대한 일반국민, 해당 공공시설 관리자, 집행공무원의 인지도, 수용도 및 실천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 3) 국민건강증진법 9조(금연을 위한 조치)⁴⁾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19>
- 4)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¹⁾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2002.1.19> 2.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가. 규제 인지도

국민건강증진법 9조와 동법 시행규칙 6조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집행공무원, 시설관리자가 모두 해당 법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도 응답자의 86.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규제 인지도

조사대상	결 과(%)		
	인지	비인지	사례수 (명)
집행공무원	100.0	0.0	70
일반국민	86.8	13.2	403
시설관리자	100.0	0.0	148

나. 규제 이해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야 하는 공공건물의 종류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국민과 시설관리자의 관광숙박업소 및 목욕장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에 금연/흡연구역 구분 및 절대금연 구역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표 2-2〉 규제 이해도

	응답	인지	비인지	모름
· 대형건물	집행공무원(n=70)	70(100.0)	0(0.0)	-
	일반국민(n=403)	373(92.6)	30(7.4)	-
	시설관리자(n=148)	146(98.6)	2(1.4)	-
· 공연장	집행공무원(n=70)	70(100.0)	0(0.0)	-
	일반국민(n=403)	373(92.6)	30(7.4)	-
	시설관리자(n=148)	148(100.0)	0(0.0)	-
· 학원	집행공무원(n=70)	70(100.0)	0(0.0)	-
	일반국민(n=403)	345(85.6)	56(13.9)	-
	시설관리자(n=148)	140(94.6)	8(5.4)	-

〈표 2-2〉 계속

	응답	인지	비인지	모름
· 대규모 점포	집행공무원(n=70)	69(98.6)	1(1.4)	-
	일반국민(n=403)	344(85.4)	59(14.6)	-
	시설관리자(n=148)	135(91.2)	13(8.8)	-
· 관광 숙박업소	집행공무원(n=70)	68(97.1)	2(2.9)	-
	일반국민(n=403)	257(63.8)	141(35.0)	-
	시설관리자(n=148)	111(75.0)	37(25.0)	-
· 학교	집행공무원(n=70)	70(100.0)	0(0.0)	0(0.0)
	일반국민(n=403)	363(90.1)	38(9.4)	1(0.2)
	시설관리자(n=148)	142(95.9)	6(4.1)	0(0.0)
· 실내 체육시설	집행공무원(n=70)	70(100.0)	0(0.0)	0(0.0)
	일반국민(n=403)	370(91.8)	32(9.4)	1(0.2)
	시설관리자(n=148)	0(0.0)	1(0.2)	0(0.0)
· 의료기관	집행공무원(n=70)	70(100.0)	0(0.0)	-
	일반국민(n=403)	389(96.5)	14(3.5)	-
	시설관리자(n=148)	144(97.3)	4(2.7)	-
· 사회복지 시설	집행공무원(n=70)	68(97.1)	2(2.9)	-
	일반국민(n=403)	364(90.3)	39(9.7)	-
	시설관리자(n=148)	141(95.3)	7(4.7)	-
· 교통 시설관련	집행공무원(n=70)	68(97.1)	2(2.9)	-
	일반국민(n=403)	339(84.1)	64(15.9)	-
	시설관리자(n=148)	142(95.9)	6(4.1)	-
· 목욕장	집행공무원(n=70)	68(97.1)	2(2.9)	-
	일반국민(n=403)	291(72.2)	112(27.8)	-
	시설관리자(n=148)	121(81.8)	27(18.2)	-

다. 규제 필요성

반드시 금연 및 흡연구역을 구분해야 하는 건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법에 정한 건물에 규제 필요성에 대해 집행공무원, 일반국민, 시설관리자 모두 11개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두 필요성에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일반국민의 관광숙박업소에 대한 필요성이 79.9%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2-3〉 규제 필요성

	응답	인지	비인지	모름
· 대형건물	집행공무원(n=70)	68(97.1)	2(2.9)	-
	일반국민(n=403)	392(97.3)	11(2.2)	-
	시설관리자(n=148)	142(95.9)	6(4.1)	-
· 공연장	집행공무원(n=70)	68(97.1)	2(2.9)	0(0.0)
	일반국민(n=403)	393(97.5)	9(2.2)	1(0.2)
	시설관리자(n=148)	144(97.3)	4(2.7)	0(0.0)
· 학원	집행공무원(n=70)	70(100.0)	0(0.0)	-
	일반국민(n=403)	383(95.0)	20(5.0)	-
	시설관리자(n=148)	140(94.6)	8(5.4)	-
· 대규모 점포	집행공무원(n=70)	66(94.3)	4(5.7)	-
	일반국민(n=403)	382(94.8)	21(5.2)	-
	시설관리자(n=148)	138(93.2)	10(6.8)	-
· 관광 숙박업소	집행공무원(n=70)	68(97.1)	2(2.9)	-
	일반국민(n=403)	322(79.9)	81(20.1)	-
	시설관리자(n=148)	135(91.2)	13(8.8)	-
· 학교	집행공무원(n=70)	68(97.1)	2(2.9)	-
	일반국민(n=403)	388(96.3)	15(3.7)	-
	시설관리자(n=148)	138(93.2)	10(6.8)	-
· 실내 체육시설	집행공무원(n=70)	70(100.0)	0(0.0)	-
	일반국민(n=403)	395(98.0)	8(2.0)	-
	시설관리자(n=148)	141(95.3)	7(4.7)	-
· 의료기관	집행공무원(n=70)	69(98.6)	1(1.4)	-
	일반국민(n=403)	395(98.0)	8(2.0)	-
	시설관리자(n=148)	141(95.3)	7(4.7)	-
· 사회복지 시설	집행공무원(n=70)	70(100.0)	0(0.0)	-
	일반국민(n=403)	388(98.0)	8(2.0)	-
	시설관리자(n=148)	143(96.6)	5(3.4)	-
· 교통 시설관련	집행공무원(n=70)	68(97.1)	2(2.9)	-
	일반국민(n=403)	366(90.8)	37(9.2)	-
	시설관리자(n=148)	138(93.2)	10(6.8)	-
· 목욕장	집행공무원(n=70)	68(97.1)	2(2.9)	-
	일반국민(n=403)	350(86.8)	53(13.2)	-
	시설관리자(n=148)	133(89.9)	15(10.1)	-

라. 규제 준수 적절성

“공공시설에서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규제 준수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78.0%, 시설관리자의 81.8%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집행공무원의 경우 62.8%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일반국민과 시설관리자에 비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에 일선에서 규제하는 집행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흡연 및 금연구역 규제에 대한 조정을 하거나 실질적인 규제가 집행될 수 있도록 인력 및 감시체계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2-4〉 규제 준수 적절성

조사대상	결 과(%)				사례수 (명)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한 편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	전혀 적절하지 않음	
집행공무원	7.1	55.7	34.3	2.9	70
일반국민	18.4	59.6	21.3	0.7	403
시설관리자	14.9	66.9	17.6	0.7	148

마. 국민건강 기여도

공공시설에서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집행공무원의 금연/흡연 구역 구분이 국민건강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11.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금연/흡연 구역구분 및 공공시설 금연구역에서 금연의무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매우 우세하였다. 이에 일반인들과 시설관리자들이 금연/흡연 구역 구분이 국민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여 호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5〉 국민건강 기여도

조사대상	결 과(%)				
	매우 도움	어느 정도 도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사례수 (명)
집행공무원	54.3	34.3	11.4	0.0	70
일반국민	54.3	40.0	4.7	1.0	403
시설관리자	64.2	31.1	4.7	0.0	148

바. 규제 준수율

금연 및 흡연을 구분하여야 하는 공공건물에서 금연/흡연 구역의 구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국민, 시설관리자, 집행공무원 모두 금연/흡연 구역의 구분을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집행공무원이 일반국민이나 시설관리자보다 더 잘 준수한다고 응답하여 집행공무원의 현 행정력으로 정확한 감시가 가능하지 않아 준수율을 높게 가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소별로는 학원, 대규모점포, 교통시설 관련, 목욕장, 그리고 특히 관광숙박업소에서 일반국민과 시설관리자가 준수율이 낮다고 응답하여 준수율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2-6〉 규제 준수율

공공시설	대상자	준수	비준수	모름
· 대형건물	집행공무원(n=70)	55(78.6)	15(21.4)	-
	일반국민(n=403)	274(68.0)	126(31.3)	-
	시설관리자(n=148)	113(76.4)	35(23.6)	-
· 공연장	집행공무원(n=70)	67(95.7)	3(4.3)	0(0.0)
	일반국민(n=403)	284(70.5)	117(29.0)	2(0.5)
	시설관리자(n=148)	127(85.8)	19(12.8)	2(1.4)
· 학원	집행공무원(n=70)	57(81.4)	13(18.6)	0(0.0)
	일반국민(n=403)	202(50.1)	198(49.1)	3(0.7)
	시설관리자(n=148)	84(56.8)	61(41.2)	3(2.0)
· 대규모 점포	집행공무원(n=70)	47(67.1)	23(32.9)	0(0.0)
	일반국민(n=403)	229(56.8)	173(42.9)	1(0.2)
	시설관리자(n=148)	103(69.6)	45(30.4)	0(0.0)

〈표 2-6〉 계속

공공시설	대상자	준수	비준수	모름
· 관광 숙박업소	집행공무원(n=70)	68(85.7)	10(14.3)	0(0.0)
	일반국민(n=403)	160(39.7)	241(59.8)	2(0.5)
	시설관리자(n=148)	73(49.3)	71(48.0)	4(2.7)
· 학교	집행공무원(n=70)	65(92.9)	5(7.1)	0(0.0)
	일반국민(n=403)	255(63.3)	146(36.2)	2(0.5)
	시설관리자(n=148)	103(69.6)	45(30.4)	0(0.0)
· 실내 체육시설	집행공무원(n=70)	59(84.3)	11(15.7)	0(0.0)
	일반국민(n=403)	297(73.7)	102(25.3)	4(0.9)
	시설관리자(n=148)	124(83.8)	24(16.2)	0(0.0)
· 의료기관	집행공무원(n=70)	68(97.1)	2(2.9)	-
	일반국민(n=403)	360(89.3)	43(10.7)	-
	시설관리자(n=148)	133(89.9)	15(10.1)	-
· 사회복지 시설	집행공무원(n=70)	65(92.9)	0(7.1)	0(0.0)
	일반국민(n=403)	313(77.7)	87(21.6)	3(0.7)
	시설관리자(n=148)	120(81.1)	24(16.2)	4(2.7)
· 교통 시설관련	집행공무원(n=70)	49(70.0)	21(30.0)	0(0.0)
	일반국민(n=403)	211(52.4)	191(47.4)	1(0.2)
	시설관리자(n=148)	112(75.7)	36(24.3)	0(0.0)
· 목욕장	집행공무원(n=70)	45(64.3)	25(35.7)	0(0.0)
	일반국민(n=403)	182(45.2)	220(54.6)	1(0.2)
	시설관리자(n=148)	71(48.0)	77(52.0)	0(0.0)

사. 규제 준수 감시가능 여부

판단하시기에 공공시설의 금연 구역에서 사람들이 반드시 금연을 하고 있는지를 현재의 집행력으로 어느 정도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규제 준수 감시 가능여부에 대해 일반국민과 시설관리자 모두 과반수 이상이 현재의 집행력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집행공무원은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82.9%로 나타나 현 감시체제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행정규제 준수가 보다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시 기능 역시 강화되어야 하겠다.

〈표 2-7〉 규제 준수 감시가능 여부

대상	현재 집행력으로도 가능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	무응답	사례수 (명)
집행공무원	1.4	15.7	82.9	0.0	70
일반국민	10.7	32.0	57.3	0.0	403
시설관리자	13.5	29.7	56.8	0.0	148

아. 벌칙부과의 적절성

공공건물에서 금연구역·흡연구역의 구분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규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현재 수준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50% 정도이며,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38%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관리자는 강화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6%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완화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8〉 벌칙부과의 적절성

조사대상	결 과(%)			사례수(명)
	강화	현재수준	완화	
집행공무원	38.6	40.0	21.4	70
일반국민	37.0	42.4	20.6	403
시설관리자	17.6	50.0	32.4	148

자. 요약

공공시설에서의 금연/흡연 구역 구분 규제에 관해 집행공무원과 시설관리자 및 일반국민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대상별로는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금연 및 흡연구역을 구분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는 집행공무원은 매우 높게 나타나나, 일반국민과 시설관리자에서는 관광숙박업소와 목욕장이 흡연 및 금연구역을 구분하여야 하는 장소라는 인지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흡연 및 금연구역 구분의 필요성도 집행공무원은 대체로 법에 제시된 11개 공공시설 모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관광업소의 금연/흡연구역 구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일반국민이, 또한 목욕장에 대해서도 일반국민과 시설 관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흡연 및 금연구역 구분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과 시설관리자에서 거의 95%에 달하는 비율로 높았고 집행공무원도 88.6%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응답자 모두 흡연 및 금연구역 구분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금연/흡연 구역 구분 규제 준수율에 대해서는 집행공무원, 일반국민, 시설관리자 모두 의료기관, 공연장 등이 가장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으며, 집행공무원은 전반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준수율을 더 높게 예측하고 있었다. 준수율이 낮은 시설로는 대형건물, 학원, 관광숙박업소, 교통관련시설, 목욕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준수 감시가능 여부로는 일반국민과 시설관리자가 각기 57.3%, 56.8%가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한데 반해, 집행공무원의 82.9%가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실제 감시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것을 시사하였다.

현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현재수준 정도면 괜찮다가 40~50%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집행공무원 38.6%, 일반국민 37.0%가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설관리자의 32.4%가 완화해야한다고 응답하여 대상자별 차이가 있었다.

〈표 2-9〉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 구역구분

조사대상	결 과(%)					
	규제 인지도	규제 필요성	규제 준수 적절성	국민건강 기여도	규제 준수율	준수감시 가능성
집행공무원	100.0	88.9	62.8	88.6	82.7	17.1
일반국민	86.8	93.7	78.0	94.3	62.4	42.7
시설관리자	100.0	94.2	81.8	95.3	71.5	43.2

주: 규제 인지도: '알고 있다'의 비율임.

규제 필요성: '그렇다'의 비율임.

규제 준수 적절성: '매우 적절하다' +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의 합임.

국민건강 기여도: '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의 합임.

규제 준수율: '그렇다'의 비율임.

준수감시 가능성: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의 합임.

조사 결과를 <표 2-9>와과 같이 종합해 볼 때, 이 규제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국민건강 기여도는 세 집단에 있어 거의 모두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규제가 준수하기 적절한가에 있어서는 집행공무원의 62.8%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해 시설관리자가 81.8%라고 응답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준수율에 대해서는 집행공무원은 비교적 잘 지킨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은 60%를 겨우 넘는 정도로 준수한다고 지적하여 다소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단속가능성에 대해 단속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50%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집행공무원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7.1%로 나타나 단속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집행공무원이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단속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 공공시설에서의 절대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흡연 및 금연구역을 구분하도록 지정된 공공시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6조) 중 일정 공간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은 1.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2. 의료기관 중 환자의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진료를 위한 대기실 포함) 3.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다)중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설 4.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국내선 항공기, 철도의 차량내부, 도시철도의 지하역사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승객 또는 보행자에게 제공되는 교통관련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한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제시된 모든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이다. 또한 절대금연구역의 지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대금연구역에 대한 인지도, 수용도, 실천도에 대한 일반국민, 해당시설관리자, 집행공무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규제 인지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일부는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공무원이나 시설관리자 모두 절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집행공무원(98.6%)은 시설관리자(77.7%)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10〉 규제 인지도

(단위: 명, %)

조사대상	결 과	
	인지	비인지
집행공무원	69(98.6)	1(1.4)
시설관리자	115(77.7)	33(22.3)

나. 규제 이해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장소에 대한 높은 이해도(전반적으로 90% 이상)를 보이고 있었다. 건물별로는 집행공무원은 학원(98.6%)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절대금연구역설치 장소를 100% 이해하고 있었으며, 시설관리자는 의료기관(98.6%)에서의 절대금연구역 지정 장소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반면 공연장, 학원에서의 절대금연구역지정 장소에 대한 이해도가 동일하게 95.3%로 가장 낮았다.

〈표 2-11〉 규제 이해도

(단위: 명, %)

대상 건물	조사대상	결 과	
		예	아니오
· 대형건물 (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43(96.6)	5(3.4)
· 공연장 (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41(95.3)	7(4.7)
· 학원 (승강기)	집행공무원	69(98.6)	1(1.4)
	시설관리자	141(95.3)	7(4.7)
·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45(98.0)	3(2.0)
· 관광숙박업소 (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40(94.6)	8(5.4)
· 학교 (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43(96.6)	5(3.4)
· 실내체육시설 (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42(95.9)	6(4.1)
· 의료기관 (대기실, 진료실, 입원실, 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46(98.6)	2(1.4)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직접 이용장소/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43(96.6)	5(3.4)
· 교통시설관련 (차량안, 지하철 및 역사안/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42(95.9)	6(4.1)
· 목욕탕(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39(93.9)	9(6.1)

다. 규제필요성

절대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높은 찬성을 나타냈으며, 집행공무원과 시설관리자 모두 높은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특히 집행공무원은 법에 지정된 모든 공공시설에서의 절대금연구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100%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집행공무원은 대형건물,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승강기 등 절대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하여 100% 찬성

을 하였다. 또한 학원 98.0%, 교통시설 98.0%, 관광숙박업소97.3%, 목욕탕 97.3%의 순으로 절대금연구역지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표 2-12〉 규제필요성

(단위: 명, %)

대상 건물	조사대상	결 과	
		예	아니오
· 대형건물 (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48(100.0)	0(0.0)
· 공연장 (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48(100.0)	0(0.0)
· 학원 (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45(98.0)	3(2.0)
·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중 상품판매장소/ 승강기)	집행공무원	69(98.6)	1(1.4)
	시설관리자	146(98.6)	3(2.0)
· 관광숙박업소 (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44(97.3)	4(2.7)
· 학교 (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47(99.3)	1(0.7)
· 실내체육시설 (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48(100.0)	0(0.0)
· 의료기관 (대기실, 진료실, 입원실, 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48(100.0)	0(0.0)
· 사회복지시설(이용자 직접 이용장소/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48(100.0)	0(0.0)
· 교통시설관련(차량안, 지하철 및 역사안/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45(98.0)	3(2.0)
· 목욕탕(승강기)	집행공무원	70(100.0)	0(0.0)
	시설관리자	144(97.3)	4(2.7)

라. 규제 준수 적절성

공공시설에서의 절대금연구역의 지정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렵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 절대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현실적이며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집행공무원은 매우 적절하다와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

답이 85.7%이었다. 시설관리자는 매우 적절하다와 대체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85.8%이었다.

〈표 2-13〉 규제 준수 적절성

(단위: 명, %)

조사대상	결 과			
	매우 적절하다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집행공무원	11(15.7)	49(70.0)	10(14.3)	0(0.0)
시설관리자	37(25.0)	90(60.8)	19(12.8)	2(1.4)

마. 규제의 국민 건강 기여도

공공시설에서의 절대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 집행공무원과 시설관리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매우 도움이 된다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가 집행공무원은 97.2%, 시설관리자는 94.6%로 매우 높았다.

〈표 2-14〉 규제의 국민건강기여도

(단위: 명, %)

조사대상	결 과			
	매우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집행공무원	41(58.6)	27(38.6)	2(2.9)	0(0.0)
시설관리자	99(66.9)	41(27.7)	8(5.4)	0(0.0)

바. 규제 준수율

절대 금연구역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인 규제 준수율의 경우, 공공시설에서의 지정된 절대금연구역을 준수한다는 응답은 90% 정도를 상회하였

다. 절대금연지역을 준수하는 읍이 가장 높은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집행공무원 98.6%, 시설관리자 95.9%)이며, 준수율이 가장 낮은 시설은 대규모 점포(집행공무원 88.6%, 시설관리자 85.8%)이었다. 해당 시설별 준수 정도는 집행공무원과 시설관리자의 응답 비율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학교, 목욕탕, 공연장, 교통관련시설, 대형건물, 학원, 관광숙박업소, 대규모 점포의 순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15〉 규제 준수율

(단위: 명, %)

대상규제		조사대상	결 과		
			예	아니오	모름
· 대형건물	승강기	집행공무원	64(91.4)	6(8.6)	0(0.0)
		시설관리자	134(90.5)	12(8.1)	2(1.4)
· 공연장	승강기	집행공무원	65(92.9)	5(7.1)	0(0.0)
		시설관리자	138(93.2)	10(6.8)	0(0.0)
· 학원	승강기	집행공무원	63(90.0)	7(10.0)	0(0.0)
		시설관리자	124(83.8)	22(14.9)	2(1.4)
·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중 상품판매장소, 승강기	집행공무원	62(88.6)	8(11.4)	0(0.0)
		시설관리자	127(85.8)	20(13.5)	0(0.0)
· 관광숙박업소	승강기	집행공무원	63(90.0)	7(10.0)	0(0.0)
		시설관리자	123(83.1)	24(16.2)	1(0.7)
· 학교	승강기	집행공무원	65(92.9)	5(7.1)	0(0.0)
		시설관리자	137(92.6)	10(6.8)	1(0.7)
· 실내체육시설	승강기	집행공무원	66(94.3)	4(5.7)	0(0.0)
		시설관리자	139(93.9)	9(6.1)	0(0.0)
· 의료기관	대기실, 진료실, 입원실, 승강기	집행공무원	69(98.6)	1(1.4)	0(0.0)
		시설관리자	141(95.3)	5(3.4)	2(1.4)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직접 이용장소/승강기	집행공무원	69(98.6)	1(1.4)	0(0.0)
		시설관리자	142(95.9)	4(2.7)	2(1.4)
· 교통시설관련	차량안, 지하철 및 역사안/승강기	집행공무원	64(91.4)	6(8.6)	0(0.0)
		시설관리자	139(93.9)	9(6.1)	0(0.0)
· 목욕탕	승강기	집행공무원	66(94.3)	4(5.7)	0(0.0)
		시설관리자	129(87.2)	19(12.8)	0(0.0)

또한 별도로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에서의 절대금연지역 준수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94.6%가 준수한다. 5.4%가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하였다.

사. 규제 준수 감시가능 여부

공공건물에서 지정된 절대 금연구역이 반드시 실행되고 있는지를 현재의 집행력으로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즉, 준수 감시여부에 대해서는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집행공무원 77.1%, 시설관리자 54.7%로 높았다. 현재 집행력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높으므로 집행력을 강화시켜 준수율을 더욱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2-16〉 규제 준수 감시가능 여부

(단위: 명, %)

조사대상	결 과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집행공무원	4(5.7)	12(17.1)	54(77.1)
시설관리자	26(17.6)	41(27.7)	81(54.7)

아. 벌칙부과의 적절성

공공건물에서 지정된 절대금연구역의 지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집행 공무원은 현재수준이 적당하거나 강화 해야하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나, 시설관리자는 대부분 현재수준을 유지하거나 완화하여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2-17〉 벌칙부과의 적절성

(단위: 명, %)

조사대상	결 과			
	강화	현재수준	완화	무응답
집행공무원	31(44.3)	23(32.9)	15(21.4)	1(1.4)
시설관리자	26(17.6)	73(49.3)	49(33.1)	-

자. 요약

공공시설에서의 절대금연 구역 지정에 대한 인지도는 집행공무원(98.6%)과 시설관리자(77.0%)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건물별에 따른 규제 이해도 역시 모두 90% 이상이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하였다. 또한 이러한 절대금연구역 제한이 집행공무원, 시설관리자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규제는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절대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은 건물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90% 이상이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절대금연구역 규제는 지키기에 적절한 편이라고 집행공무원(70%)과 시설관리자(60.8%) 응답하였고, 국민건강 기여도 역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집행공무원(59.6%)과 시설관리자(66.9%)가 응답하여 필요성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긍정적인 수준의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절대금연구역규제는 시설장이나 집행공무원 모두 잘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현재 집행력으로는 절대금연구역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규제 준수율은 건물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 80% 이상 나타났으나, 준수감시 가능여부에 관해서는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집행공무원(77.1%), 시설관리자(54.7%)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현재 준수하고 있으나 집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부과의 적절성은 집행공무원은 강화(44.3%)하거나 현재수준(32.9%)해야 하고, 시설관리자는 현재수준(49.3%)를 유지하거나 완화(33.1%)를 해야한다는 응답이 나와 서로 엇갈리고 있었다.

〈표 2-18〉 공공시설에서의 절대 금연구역 지정

(단위: %)

대상	결 과						
	규제인지도	규제필요성	규제 준수 적절성	국민건강 기여도	규제 준수율	준수감시 가능성	벌칙부과 적절성
집행공무원	98.6	99.0	85.7	97.2	93.0	22.8	32.9
시설관리자	77.7	90.0	85.8	94.6	90.5	45.3	49.3

주: 규제 인지도: ‘알고 있다’의 비율임.
 규제 필요성: ‘그렇다’의 비율임.
 규제 준수 적절성: ‘매우 적절하다’ +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의 합임.
 국민건강 기여도: ‘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의 합임.
 규제 준수율: ‘그렇다’의 비율임.
 준수감시 가능성: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의 합임.

절대금연구역의 지정규제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준수율 등 단계적인 응답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절대금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며,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한 준수 감시 가능성이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가능하다는 응답이 34.1%로 매우 낮았다. 또한 벌칙 부과도 적절하다는 응답이 41.1%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절대금연구역의 준수율은 높이기 위한 행정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과태료 수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시설관리자와 집행공무원의 응답에는 차이가 있었다. 집행공무원이 시설관리자에 비하여 절대금연구역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국민건강에의 기여도를 높게 응답하였다. 그러나 규제 준수 감시가 어렵다는 응답이 80% 정도로 감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과태료 부과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44.3%로 실질적인 규제감시 기능에 인력과 벌칙 강화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시설관리자는 절대금연구역의 준수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85.8%로 집행공무원의 85.7%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규제인지, 필요성, 국민건강기여도에 대하여 집행공무원 보다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 또한 규제준수 감시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45.3%, 과태료의 수준이 적절하다가 49.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더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의 감시를 원하지 않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3.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에는 이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흡연구역은 칸막이와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되어있다.⁵⁾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이에 대한 시설관리자, 집행공무원의 설문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5) 1. 표시기준

가. 금연구역: (1) 금연구역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2) 표시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 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3) 시설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5)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6) 스티커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흡연구역: (1) 흡연구역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2) 표시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그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3) 표시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시판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시설기준

가.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수에 비례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고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흡연구역을 금연구역과 인접된 장소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흡연을 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흡연구역에는 흡연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아니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별표3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시설기준(제7조제1항 및 제2항관련)]

가. 규제 인지도

공공시설에서 흡연구역에는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을 집행공무원이나 시설관리자 모두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집행공무원(100%)과 시설관리자(97.3%)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9〉 규제 인지도

(단위: %, 명)

조사대상	결 과		사례수
	인지	비인지	
집행공무원	100.0	0.0	70
시설관리자	97.3	2.7	148

나. 규제 이해도

지정된 흡연구역에는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흡연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는 규제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모두 90% 이상의 높았다. 집행공무원은 100%, 시설관리자는 91.9%이었다.

〈표 2-20〉 규제 이해도

(단위: %, 명)

조사대상	결 과		사례수
	예	아니오	
집행공무원	100.0	0.0	70
시설관리자	91.9	8.1	148

다. 규제 필요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 흡연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하여야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집행공무원 80%, 시설관리자 91.9%로 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하였다.

〈표 2-21〉 규제 필요성

(단위: %, 명)

조사대상	결 과		
	예	아니오	사례수
집행공무원	80.0	20.0	70
시설관리자	91.9	8.1	148

라. 규제 준수적절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 흡연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하여야하는 규제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라는 규제 준수 가능성에 대하여는 ‘매우 적절하다’와 ‘대체로 적절하다’가 집행공무원 60.0%, 시설관리자 73.7%로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이 반수 이상이었다. 그러나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응답도 우세하게 나타나 집행공무원과 시설관리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2-22〉 규제 준수 적절성

(단위: %, 명)

조사대상	결 과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하다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집행공무원	7.1	52.9	38.6	1.4	70
시설관리자	16.9	56.8	25.0	1.4	148

마. 국민건강 기여도

지정된 흡연구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된

다는 응답이 집행공무원 95.7%, 시설관리자 83.2%로 매우 높다.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에 관한 집행공무원과 시설관리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2-23〉 국민건강 기여도

(단위: %, 명)

조사대상	결 과				사례수
	매우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집행공무원	41.4	54.3	4.3	0.0	70
시설관리자	60.8	32.4	6.8	0.0	148

바. 규제 준수율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에 집행공무원과 시설관리자 모두 준수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준수율은 집행공무원에서 칸막이 설치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시설관리자 집단에서도 칸막이, 환기시설이 과반수를 약간 넘는 낮은 수준의 준수율을 보여주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표 2-24〉 규제 준수율

(단위: 명, %)

대상규제	조사대상	결과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집행공무원	77.1	22.9	0.0	70
	시설관리자	64.9	35.1	0.0	148
스티커	집행공무원	94.3	5.7	0.0	70
	시설관리자	91.2	8.1	0.7	148
칸막이	집행공무원	25.7	74.3	0.0	70
	시설관리자	58.1	39.9	2.0	148
환기	집행공무원	52.9	47.1	0.0	70
	시설관리자	79.7	18.2	2.0	148

사. 규제 준수감시가능여부

흡연구역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였는지에 대한 감시여부에 대해서는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현재 규제 준수는 잘하고 있으나, 집행력으로 불가능하다는 응답으로 보아 집행력을 강화시켜 준수율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

〈표 2-25〉 규제 준수감시가능여부

(단위: %, 명)

조사대상	결 과			사례수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	현재의 집행력으로불가능하다	
집행공무원	1.4	21.4	77.1	70
시설관리자	14.9	36.5	48.6	148

아. 벌칙부과의 적절성

흡연구역에 필요한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벌칙부과의 적절성은 전반적으로 집행 공무원은 현재수준이 적당하거나 강화해야하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나(현재 수준: 50.0%, 강화: 38.6%) 시설관리자는 대부분 현재수준을 유지하거나(52.7%) 완화(26.4%)하여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2-26〉 벌칙부과의 적절성

(단위: %, 명)

조사대상	결 과				사례수
	강화	현재수준	완화	무응답	
집행공무원	38.6	50.0	10.0	1.4	70
시설관리자	20.9	52.7	26.4	-	148

자. 요약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의 규제인지는 인지도와 이해도 모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대부분 규제가 필요하고 수준 및 내용도 적절하고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하였다. 규제 필요성은 집행공무원(80%)과 시설관리자(91.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규제 준수적절성 역시 대체로 적절한 편이라고 집행공무원(52.9%)과 시설관리자(56.8%)가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 기여도 역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집행공무원(95.7%), 시설관리자(93.2%) 모두 과반수가 넘는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규제준수 항목에서는 칸막이, 환기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음이 나타났고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규제 준수율은 집행공무원(77.1%)과 시설관리자(64.9%)가 준수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흡연구역필요시설인 스티커만 집행공무원(94.3%), 시설관리자(91.2%)가 준수한다고 대답했을 뿐, 칸막이는 집행공무원(74.3%)이 준수하지 않았고, 환기시설 역시 집행공무원(52.9%), 시설관리자(79.7%) 모두 반수만 약간 넘는 수준으로 준수하고 있어 흡연구역필요시설을 단지 스티커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준수 감시 가능여부는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집행공무원(77.1%)과 시설관리자(48.6%)가 응답하였고, 벌칙부과의 적절성은 집행공무원은 현재수준이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6%이고 시설관리자는 현재수준이나 완화해야한다는 것이 89.1%로 응답하여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흡연구역에 스티커, 칸막이, 환기시설 등의 필요시설 설치에 대하여 규제인지(98.7%)와 이러한 규제가 국민건강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인식(94.5%) 높다. 그러나 특히 집행공무원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에 대하여 66.9%만이 가능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규제 감시가 가능하다는 비율도 37.1%이며, 집행공무원은 22.8%로 매우 낮다. 흡연시설 설치 규제는 집행공무원과 시설관리자가 실제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안의 제시 또는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표 2-27〉 요약

(단위: %)

대상	결 과						
	규제인지	규제필요	규제 준수 적절성)	국민건강 기여도)	규제 준수율	준수감시 가능성)	벌칙부과 적절성)
집행 공무원	100.0	80.0	60.0	95.7	77.1	22.8	50.0
시설 관리자	97.3	91.9	73.7	93.2	64.9	51.4	52.7

주: 규제 인지도: '알고 있다'의 비율임.

규제 필요성: '그렇다'의 비율임.

규제 준수 적절성: '매우 적절하다' +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의 합임.

국민건강 기여도: '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의 합임.

규제 준수율: '그렇다'의 비율임.

준수감시 가능성: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의 합임.

4.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국민건강증진법 9조 ④항 ⑤항)⁶⁾ 흡연을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 처벌법⁷⁾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경범죄처벌법 시행령)⁸⁾ 물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제에 대한 인지도, 규제 준수정도, 벌

6)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1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54. (금연장소에서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8) 범죄처벌법 시행령 범죄행위 및 범칙 금액표 [별표]<개정 1995·4·1, 1996·8·8>

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지하철 역구내, 버스·기차·전동차·항공기·선박 등 대중교통수단, 병원 등 의료시설, 석유·가스·화약류 등 위험물 저장·판매시설 또는 승강기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벌금 30,000원

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인지도

전반적으로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에 대한 인지도는 집행공무원, 시설관리자에 있어 매우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일반국민의 인지도는 88.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28〉 인지도

(단위: %, 명)

조사대상	결 과		
	인지	비인지	사례수
집행공무원	100.0	0.0	70
일반국민	88.3	11.7	403
시설관리자	99.3	0.7	148

나. 필요성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 금연규제는 집행공무원, 일반국민, 시설관리자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시설관리자의 필요성 응답이 92.6%로 두 집단(집행공무원: 98.6%, 일반국민: 96%)보다 약간 낮았다.

〈표 2-29〉 필요성

(단위: %, 명)

조사대상	결 과		
	필요	불필요	사례수
집행공무원	98.6	1.4	70
일반국민	96.0	4.0	403
시설관리자	92.6	7.4	148

나.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역대합실, 버스터미널, 실내체육관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벌금 20,000원

다. 규제 준수적절성

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집행공무원이 별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도 24.3%로 나타나 일선에서 규제하는 집행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규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2-30〉 규제 준수적절성

(단위: %, 명)

조사대상	결 과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한 편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	전혀 적절하지 않음	
집행공무원	10.0	65.7	24.3	0.0	70
일반국민	13.9	65.0	20.6	0.5	403
시설관리자	16.2	64.2	18.9	0.7	148

라. 국민건강 기여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금연의무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매우 우세하였다. 집행공무원의 경우는 97.1%, 일반국민 96.2%, 시설관리자, 98%의 수준으로 절대적인 찬성을 하였다.

〈표 2-31〉 국민건강 기여도

(단위: %, 명)

조사대상	결 과				사례수
	매우 도움	어느 정도 도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집행공무원	55.7	41.4	2.9	0.0	70
일반국민	53.8	42.4	3.2	0.5	403
시설관리자	41.9	56.1	2.0	0.0	148

마. 규제 준수율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사람들이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집행공무

원, 일반국민, 시설관리자 모두 반수를 넘지 못하는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집행공무원 48.6%, 일반국민 36.7%, 시설관리자 41.9%만이 금연구역에서 금연을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을 실시하도록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32〉 규제 준수율

(단위: %, 명)

조사대상	결 과(%)			사례수 (명)
	금연구역에서 금연 실시	금연구역에서 금연하지 않음	모르겠음	
집행공무원	48.6	51.4	0.0	70
일반국민	36.7	63.3	0.0	403
시설관리자	41.9	56.1	2.0	148

바. 준수 감시가능 여부

공공시설의 금연 구역에서 사람들이 반드시 금연을 하고 있는지를 현재의 집행력으로 어느 정도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규제 준수 감시 가능여부에 대해 집행공무원은 금연/흡연 구역 구분과 공공시설에서의 금연의무 부분 모두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82.9%로 나타나 현 감시체제가 매우 열악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표 2-33〉 준수 감시가능 여부

(단위: %, 명)

조사대상	결 과			무응답	사례수
	현재 집행력으로도 가능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		
집행공무원	4.3	11.4	82.9	1.4	70
일반국민	10.9	32.0	56.8	0.2	403
시설관리자	12.8	33.8	53.4	0.0	148

사. 벌칙부과의 적절성

현재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은 현재수준이 적당하다가 50.4%, 현재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38.5%, 현재 보다 완화하여야 한다고 11.2%로 현재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2-34〉 벌칙부과의 적절성

(단위: 명, %)

응답		일반국민(n=403)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벌금부과	· 벌칙수준 강화해야	155(38.5)
	· 현재수준 적당	203(50.4)
	· 완화해야	45(11.2)

아. 요약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국민건강 기여도는 세 집단에 있어 모두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2-35〉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단위: %)

조사대상	결 과					
	규제 인지도	규제 필요성	규제 준수 적절성	국민건강 기여도	규제 준수율	준수감시 가능성
집행공무원	100.0	98.6	75.7	97.1	48.6	15.7
일반국민	88.3	96.0	78.9	96.2	36.7	42.9
시설관리자	99.3	92.6	80.4	98.0	41.9	46.6

주: 규제 인지도: '알고 있다'의 비율임.

규제 필요성: '그렇다'의 비율임.

규제 준수 적절성: '매우 적절하다' +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의 합임.

국민건강 기여도: '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의 합임.

규제 준수율: '그렇다'의 비율임.

준수감시 가능성: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의 합임.

그러나 이 규제가 준수하기 적절한가에 있어서는 70~80% 내외로 찬성하고 있어, 반대의 비율이 25%가량 되었고, 규제의 준수율은 40~50%로 절반 이하만이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규제에 대한 단속가능성으로써 단속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절반인 50%에 못미치는 낮은 비율로 나타나, 이 규제의 단속을 위한 집행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Ⅲ. 피규제집단의 금연규제에 대한 태도

이 장에서는 금연 및 흡연구역의 설치 및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피규제집단의 이러한 규제에 대한 단계별 태도 및 태도간의 관련성을 일반국민과 시설관리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일반국민의 흡연 제한 규제에 대한 태도

가.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 구분에 대한 필요성, 인지도, 준수율간의 관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시설에서의 흡연 및 금연구역의 구분과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에 대한 태도 중 준수율, 인지도, 필요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필요성, 인지도, 준수율의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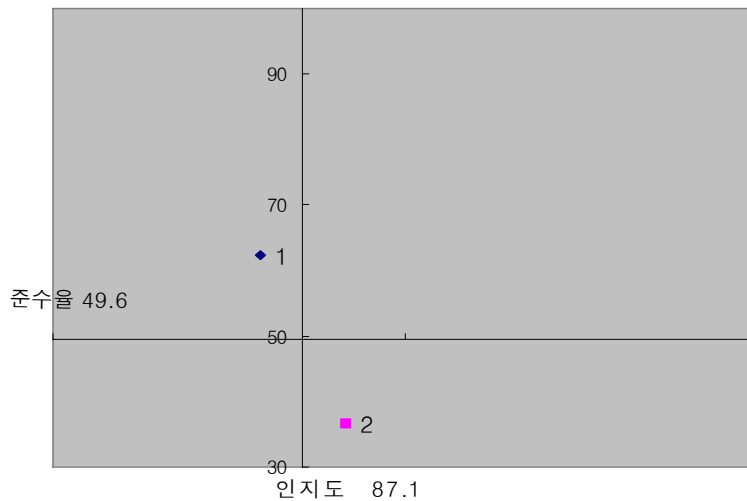
〈표 3-1〉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 구분에 대한 필요성, 인지도, 준수율간의 관계

(단위: %)

대상규제	결 과		
	준수율	인지도	필요성
<규제 1>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구분	62.4	85.9	93.7
<규제 4>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	36.7	88.3	96.0
평균	49.6	87.1	94.9

공공시설에서의 흡연 및 금연구역의 구분과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에 대한 인지도와 준수율의 평균으로 일반국민에 대해 Portfolio 분석을 한 결과,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 규제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을 웃돌고 있으나, 준수율은 매우 낮아 이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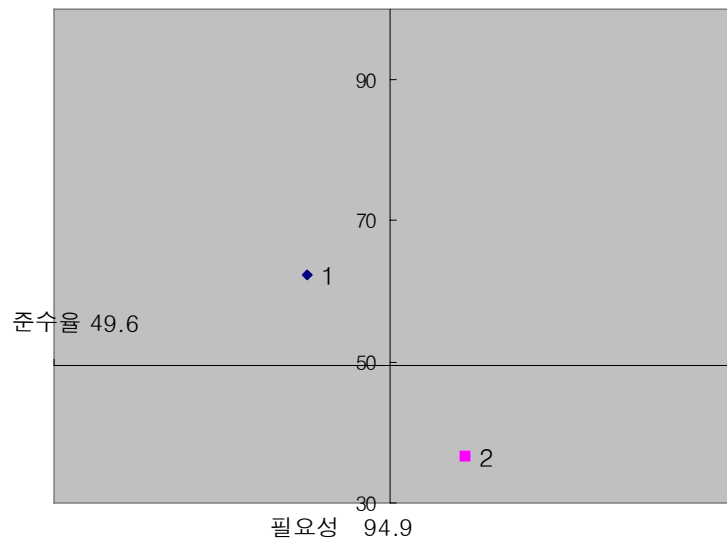
[도 3-1] 2종 규제 인지도 /준수율 - 일반국민



- 주 1: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 구분
- 2: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두 종의 규제에 대한 필요성과 준수율의 평균으로 피규제집단에 대해 Portfolio 분석을 한 결과, 두 가지 규제 모두 필요성은 높이 인식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준수율이 낮았다. 특히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평균을 웃돌고 있으나, 준수율은 매우 낮아 이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도 3-2] 규제 필요성 /준수율 - 일반국민



- 주 1: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 구분
 주 2: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나. 공공시설의 종류별 흡연/금연구역 구분에 대한 필요성, 인지도, 준수율간의 관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시설에서의 흡연 및 금연구역의 구분에 대한 태도를 해당 공공시설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공공시설에서 필요성, 인지도, 준수율의 비율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3-2〉 시설별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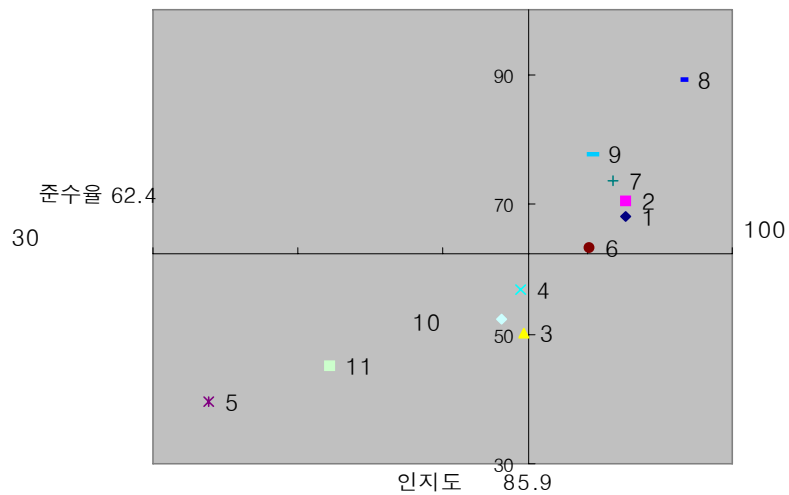
(단위: %)

시설	조사대상	결 과		
		준수율	인지도	필요성
· 대형건물	일반국민	68.0	92.6	97.3
· 공연장	일반국민	70.5	92.6	97.5
· 학원	일반국민	50.1	85.6	95.0
· 대규모점포	일반국민	56.8	85.4	94.8
· 관광숙박업소	일반국민	39.7	63.8	79.9
· 학교	일반국민	63.3	90.1	96.3
· 실내체육시설	일반국민	73.7	91.8	98.0
· 의료기관	일반국민	89.3	96.5	98.0
· 사회복지시설	일반국민	77.7	90.3	96.3
· 교통시설관련	일반국민	52.4	84.1	90.8
· 목욕장	일반국민	45.2	72.2	86.8
평균	일반국민	62.4	85.9	93.7

시설별 규제 인지도와 준수율의 평균으로 일반국민에 대해 Portfolio 분석을 한 결과,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교통시설 관련, 목욕장은 규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낮은 준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규제의 준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흡연/금연구역 구분 규제에 대한 홍보를 제고해야 한다.

나머지 시설에 있어서는 일반국민의 규제에 대한 인지도가 평균 이상의 수준이었고, 이러한 수준이 준수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인지도와 준수율간의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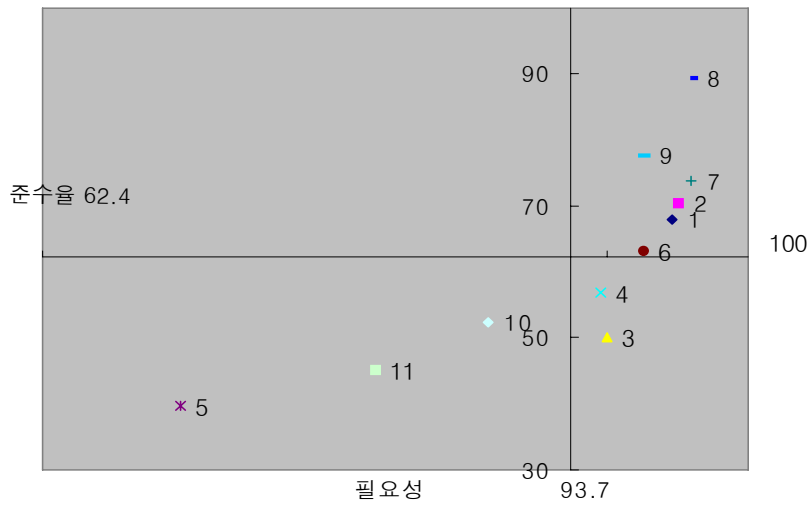
[도 3-3] 시설별 흡연/금연구역 구분 규제 인지도/준수율 - 일반국민



주: 1. 대형건물 2. 공연장 3. 학원 4. 대규모점포 5. 관광숙박업소 6. 학교
7. 실내체육시설 8. 의료기관 9. 사회복지시설 10. 교통시설 관련 11. 목욕장

필요도와 준수율간의 관련성에 대해 Portfolio 분석을 한 결과, 관광숙박업소, 교통시설 관련, 목욕장은 규제에 대한 낮은 필요도가 낮은 준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제의 필요도를 높이고 준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일반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면 학원과 대규모 점포는 규제의 필요성은 높았으나, 준수율은 낮아, 이 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줄일 수 있도록 단속이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도 3-4] 시설별 흡연/금연구역 구분 규제 필요도/준수율 - 일반국민



주: 1. 대형건물 2. 공연장 3. 학원 4. 대규모점포 5. 관광숙박업소 6. 학교
7. 실내체육시설 8. 의료기관 9. 사회복지시설 10. 교통시설 관련 11. 목욕장

다. 일반국민의 공공시설의 종류별 흡연/금연구역 구분에 대한 준수적절성, 국민건강기여도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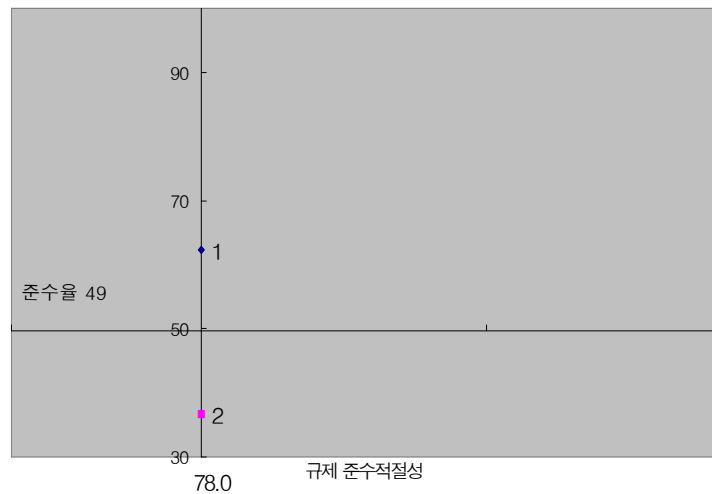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구분,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의 두 종의 규제에 대한 준수 적절성과 준수율에 대한 Portfolio 분석을 한 결과, 규제수준의 적절성이 준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 규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내용적정성(준수하계에 적정함)에 대한 점수 보다, 실제 준수율은 매우 낮아 이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함을 함유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3-3〉 일반국민의 공공시설의 종류별 흡연/금연구역 구분에 대한 준수적절성, 국민건강기여도 간의 관계

(단위: %)

대상규제	결 과		
	준수율	규제 준수적절성	국민건강 기여도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구분	62.4	78.0	94.3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36.7	78.0	96.2
평균	49.6	78.0	95.3

[도 3-5] 규제 준수적절성 /준수율 -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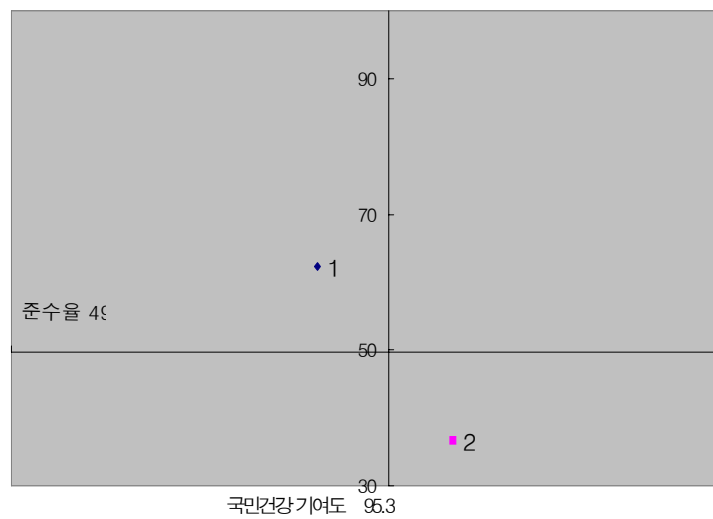


- 주 1: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 구분
 주 2: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구분,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에 대한 목적부합성 및 효과와 준수율의 평균으로 일반국민에 대해 Portfolio 분석을 한 결과, 공공시설의 흡연/금연구역 구분 규제에 대하여는 국민건강기여도는 평균보다 낮았으나, 실천율은 평균 보다 높았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규제는 목적부합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준수율은 낮

았다. 따라서 이 규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도 3-6] 국민건강 기여도/준수율 - 일반국민



- 주 1: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 구분
- 주 2: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2. 시설관리자의 흡연 제한 규제에 대한 태도

가. 시설관리자의 흡연규제에 대한 준수적절성, 국민건강기여도 간의 관계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의 구분, 공공시설에서의 절대 금연구역 지정,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규제의 국민 건강기여정도, 준수적절성(준수 가능성), 실제 준수율의 3가지의 관련성을 본 결과

국민건강기여도, 준수적절성, 준수율의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준수율과 준수적절성은 공공시설에서의 절대 금연 구역 지정규제가 가장 높았고, 국민건강 기여도는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 규제가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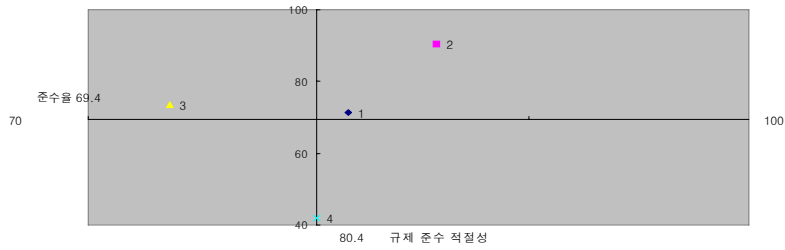
〈표 3-4〉 4종 규제의 준수적절성, 국민건강 기여도

(단위: %)

대상규제	결 과		
	준수율	준수 적절성	국민건강기여도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구분	71.5	81.8	95.3
공공시설에서의 절대 금연구역 지정	90.5	85.8	94.6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73.5	73.7	93.2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41.9	80.4	98.0
평균	69.4	80.4	95.3

각 4종 규제에 대한 수준 및 내용적절성과 준수율의 평균으로 시설관리자에 대해 Portfolio 분석을 한 결과,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 구역 구분과 공공시설에서의 절대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한 규제는 규제준수적절성과 준수율이 모두 높았다. 그리고 흡연구역에 적절한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규제가 준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높았으나, 준수율 자체는 높게 나왔다. 이는 엄격한 행정규제가 적용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준수규제에 대하여는 준수적절성에 대한 응답비율은 평균 보다 높으나, 실천율은 가장 낮아 이에 대한 행정규제의 강화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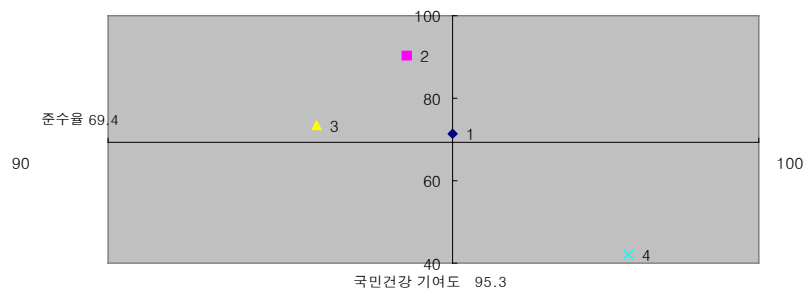
[도 3-7] 4종 규제 준수적절성 /준수율 - 시설관리자



- 주) 1: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 구분
- 2: 공공시설에서의 절대 금연구역 지정
- 3: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 4: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네 종의 규제에 대한 국민건강에 대한 기여도와 준수율의 평균으로 시설관리자에 대해 Portfolio 분석을 한 결과, 국민건강기여도와 준수율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규제는 목적부합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준수율은 낮았다. 따라서 이 규제에 대한 단속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도 3-8] 4종 규제 국민건강 기여도/준수율 - 시설관리자



- 주) 1: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 구분
- 2: 공공시설에서의 절대 금연구역 지정
- 3: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 4: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나. 시설관리자의 공공시설별 흡연규제에 대한 필요성, 인지도, 준수율 간의 관계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 구분에 대한 필요성, 인지도와 준수율의 평균으로 시설관리자에 대해 Portfolio 분석을 한 결과, 관광숙박업소, 목욕장은 규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필요성이 낮다는 인식이 낮은 준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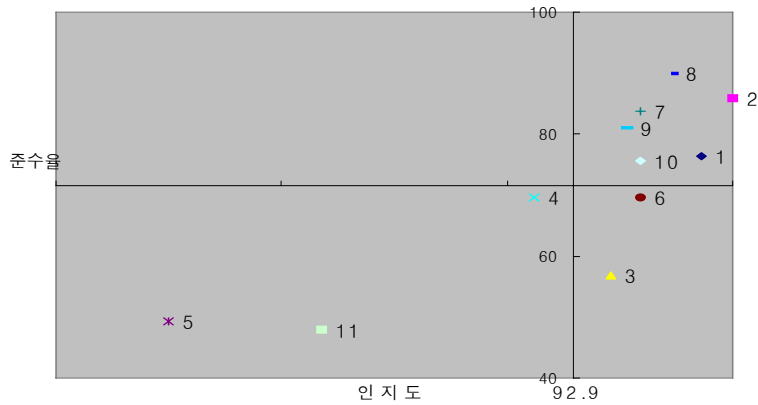
〈표 3-5〉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구분 준수율, 인지도, 필요성

(단위: %)

시설	결 과		
	준수율	인지도	필요성
· 대형건물	76.4	98.6	95.9
· 공연장	85.8	100.0	97.3
· 학원	56.8	94.6	94.6
· 대규모점포	69.6	91.2	93.2
· 관광숙박업소	49.3	75.0	91.2
· 학교	69.6	95.9	93.2
· 실내체육시설	83.8	95.9	95.3
· 의료기관	89.9	97.3	95.3
· 사회복지시설	81.1	95.3	96.6
· 교통시설관련	75.7	95.9	93.2
· 목욕장	48.0	81.8	89.9
평균	71.5	92.9	94.2

인지도와 준수율의 평균으로 시설관리자에 대해 Portfolio 분석을 한 결과, 관광숙박업소, 목욕장은 규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낮은 준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제의 준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흡연/금연구역 구분 규제에 대한 홍보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교와 학원은 규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준수율은 낮아 규제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 규제의 목적 부합성 문제 등이 준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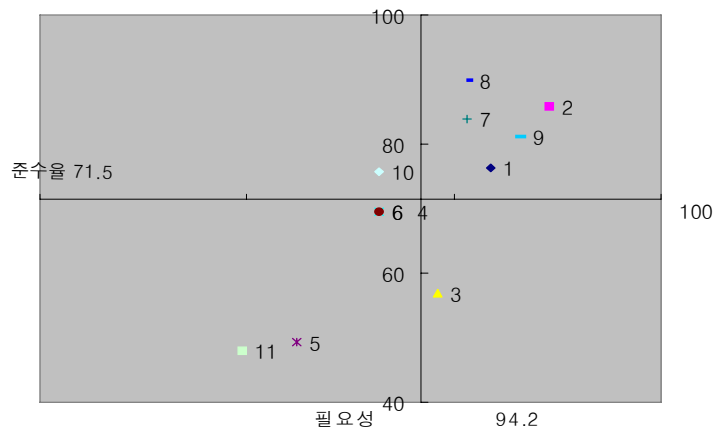
[도 3-9] 흡연/금연구역 구분 규제 인지도/준수율 - 시설관리자



주: 1. 대형건물 2. 공연장 3. 학원 4. 대규모점포 5. 관광숙박업소 6. 학교
7. 실내체육시설 8. 의료기관 9. 사회복지시설 10. 교통시설 관련 11. 목욕장

필요도와 준수율의 평균으로 시설관리자에 대해 Portfolio 분석을 한 결과, 학교, 관광숙박업소, 목욕장은 규제에 대한 낮은 필요도가 낮은 준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의 필요도를 높이고 준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자의 동의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도 3-10] 흡연/금연구역 구분 규제 필요도/준수율 - 시설관리자



주: 1. 대형건물 2. 공연장 3. 학원 4. 대규모점포 5. 관광숙박업소 6. 학교
7. 실내체육시설 8. 의료기관 9. 사회복지시설 10. 교통시설 관련 11. 목욕장

다. 시설관리자의 공공시설별 절대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 인지도, 준수율 간의 관계

절대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규제 인지도와 준수율의 평균으로 시설관리자에 대해 분석을 한 결과, 절대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인지도는 높으나, 준수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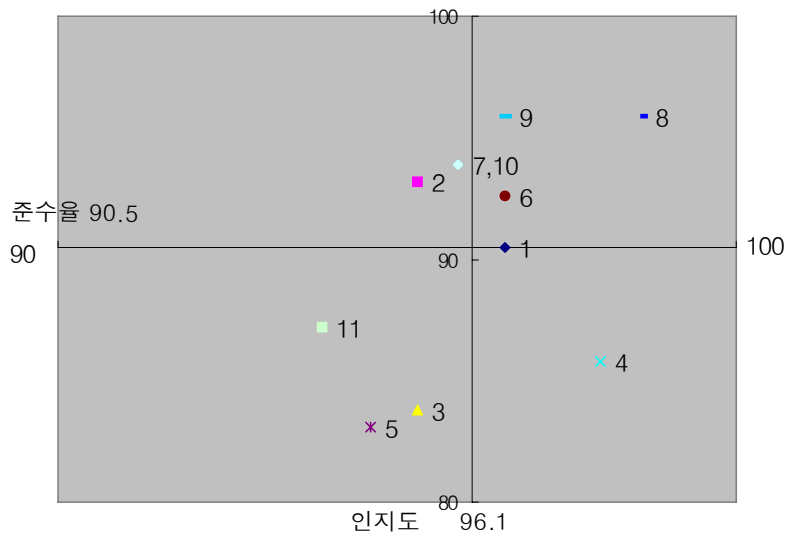
〈표 3-6〉 공공시설에서의 절대금연구역지정

(단위: %)

공공시설별 절대금연구역		결 과		
		준수율	인지도	필요성
· 대형건물	승강기	90.5	96.6	100.0
· 공연장	승강기	93.2	95.3	100.0
· 학원	승강기	83.8	95.3	98.0
·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중 상품판매장소	85.8	98.0	98.6
· 관광숙박업소	승강기	83.1	94.6	97.3
· 학교	승강기	92.6	96.6	99.3
· 실내체육시설	승강기	93.9	95.9	100.0
· 의료기관	대기실, 진료실, 입원실 등	95.9	98.6	100.0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곳, 승강기	95.9	96.6	100.0
· 교통시설관련	차량안, 지하철 및 지하철 역사 안, 승강기	93.9	95.9	98.0
· 목욕장	승강기	87.2	93.9	97.3
평균		90.5	96.1	99.0

절대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규제 인지도와 준수율의 평균으로 시설관리자에 대해 Portfolio 분석을 한 결과, 학원, 관광숙박업소, 목욕장의 규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낮은 준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제의 준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흡연/금연구역 구분 규제에 대한 홍보를 제고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는 규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준수율은 낮아 이 시설에 대한 단속의 강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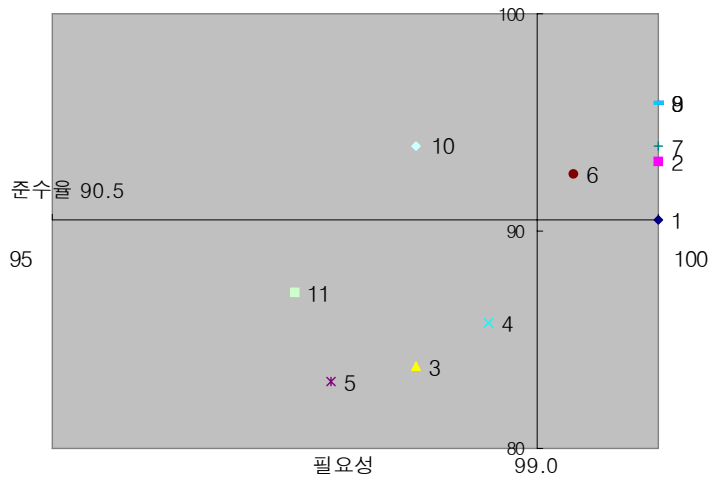
[도 3-10] 시설별 절대금연구역 지정 규제 인지도/준수율 - 시설관리자



주:) 1 대형건물 승강기 ; 2 공연장 승강기 ; 3 학원 승강기 ;
 4 대규모점포 승강기 ; 5 관광숙박업소 승강기 ; 6 학교 승강기 ;
 7 실내체육시설 승강기 ; 8 의료기관 대기실, 진료실, 승강기 ;
 9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시설, 승강기 ; 10 교통시설 관련승강기 ;
 11 목욕장 승강기

절대금연구역 지정 규제 필요도와 준수율의 평균으로 시설관리자에 대해 Portfolio 분석을 한 결과, 학교,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목욕장은 규제에 대한 낮은 필요도가 낮은 준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의 필요도를 높이고 준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자의 동의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도 3-11] 시설별 절대금연구역 지정 규제 필요도/준수율 - 시설관리자



주.) 1 대형건물 승강기 ; 2 공연장 승강기 ; 3 학원 승강기 ;
 4 대규모점포 승강기 ; 5 관광숙박업소 승강기 ; 6 학교 승강기 ;
 7 실내체육시설 승강기 ; 8 의료기관 대기실, 진료실, 승강기 ;
 9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시설, 승강기 ; 10 교통시설 관련승강기 ;
 11 목욕장 승강기

IV. 결론 및 제언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공시설에서의 흡연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민건강증진정책의 하나로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1995년 이후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실시하여 온 공공시설에서의 흡연 제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파악하고자 2002년 5월 31일~6월 7일까지 일반국민 403명, 시설관리자 148명, 집행공무원 70명 등 총 62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흡연 및 금연 구역지정 규제, 절대금연구역 지정규제,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규제,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 규제 등 4가지 규제에 대하여 각각 규제 인지도, 규제 이해도, 규제 내용의 명확성, 규제의 필요성, 규제 준수 적절성, 규제의 국민건강 기여도, 규제 준수율, 준수 감시가능 여부, 규제 위반시 벌칙부과의 적절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해당 규제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 구분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 구역의 구분에 대해 집행공무원과 시설관리자가 대부분 인지 하고 있었으며, 일반국민은 집행공무원이나 시설관리자의 보다는 다소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공공시설별로는 관광숙박업소와 목욕장에서의 흡연/금연구역 구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이들 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을 구분하여야 하는 규제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모든 공공시설에서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 구역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90%를 상회하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관광숙박업소 및 목욕장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었다. 규제 준수적절성에 대한

항목에서는 일반국민과 시설관리자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우세하였으나 집행공무원은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여 집행공무원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 구역을 구분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도 세 집단에서 일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집행공무원 88.6%, 일반국민 94.3%, 시설관리자 95.3%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 구역을 구분하여야 하는 규제 준수율이 집행공무원은 대체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반국민과 시설관리자는 이에 비해 준수율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 구역 구분이 잘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규제 준수 감시가능여부에 대해 집행공무원, 일반국민, 시설관리자 모두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여 감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구역 구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벌칙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는 현재수준이 적당하다가, 집행공무원과 일반국민은 강화해야 한다가 38.6%, 37.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1〉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금연 구역 구분 결과 요약표

조사 결과	총 평 및 대책
- 규제인지 : 집행공무원 100.0% 일반국민 86.8% 시설관리자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집행공무원, 시설관리자, 일반국민의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함. 규제 필요성 및 국민건강기여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그러나 규제 준수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또한 규제 준수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음. - 규제에 대한 필요성 및 국민건강 기여도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규제 준수율을 높여야 함. · 행정력의 강화를 통한 준수 감시 기능 강화 · 규제준수율이 낮은 목욕장, 관광숙박업소, 학원, 대규모점포, 교통시설에 대한 규제의 인지, 필요성, 국민건강의 기여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실시. (일반국민대상) · 기타 준수율을 저해하는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
- 규제필요 : 집행공무원 88.9% 일반국민 93.7% 시설관리자 94.2%	
- 건강기여 : 집행공무원 88.6% 일반국민 94.3% 시설관리자 95.3%	
- 준수적절성 : 집행공무원 62.8% 일반국민 78.03% 시설관리자 81.8%	
- 준수율 : 집행공무원 82.7% 일반국민 62.4% 시설관리자 71.5%	
- 준수감시가능 : 집행공무원 17.1%, 일반국민 42.7%, 시설관리자 43.2%	
- 벌칙부과(현재가 적당) : 집행공무원 40.0% 일반국민 42.4% 시설관리자 50.0%	

나. 공공시설에서의 절대금연 구역 지정

공공시설에서의 절대금연 구역 지정 규제에 대한 인지도는 90% 이상으로 집행공무원, 시설관리자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규제 인지도는 집행공무원(98.6%)과 시설관리자(77.0%)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건물별에 따른 규제 이해도 역시 모두 90% 이상이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하였다.

공공시설에서의 절대금연구역의 지정 규제의 필요성은 건물의 종류와는 상관

없이 90% 이상이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규제 준수적절성은 대체로 적절한 편이라고 집행공무원의 85.7%와 시설관리자의 85.8%가 응답하였고, 국민건강 기여도 역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집행공무원의 97.2%, 시설관리자의 94.6%가 응답하여 필요성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긍정적인 수준의 응답을 하였다.

〈표 4-2〉 절대금연구역의 지정 결과 요약

조사 결과	총 평 및 대 책
- 규제인지 : 집행공무원 98.6% 시설관리자 77.7%	전반적으로 집행공무원이 시설관리자에 비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인지도, 필요성, 건강기여도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임. 그러나 규제 준수율은 인지도와 필요성에 비하여 낮음. 규제 준수적절성은 더욱 낮고, 규제 준수감시는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음. - 필요성 및 국민건강기여도를 인정받은 이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력의 강화를 통한 준수 감시 기능 강화 · 규제준수율이 낮은 목욕장, 관광숙박업소, 학원, 대규모점포,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해당규제의 존재여부와 필요성, 국민건강의 기여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실시(시설관리자와 일반국민대상) · 기타 준수율을 저해하는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
- 규제필요 : 집행공무원 99.0% 시설관리자 90.0%	
- 건강기여 : 집행공무원 97.2% 시설관리자 94.6%	
- 준수적절성 : 집행공무원 85.7% 시설관리자 85.8%	
- 준수율 : 집행공무원 93.0% 시설관리자 90.5%	
- 준수감시가능 : 집행공무원 22.8% 시설관리자 45.3%	
- 별척부과(현재가 적당) : 집행공무원 32.9% 시설관리자 49.3%	

공공시설에서의 절대금연구역의 지정 규제는 잘 준수하고 있으나 현재 집행력으로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규제 준수율은 건물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 80% 이상 나타났으나, 준수감시 가능여부에 관해서는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집행공무원(77.1%), 시설관리자(54.7%)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현재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나 집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부과의 적절성은 집행공무원은 강화(44.3%)하거나 현재수준(32.9%)을 유지해야 하고, 시설관리자는 현재수준(49.3%)을 유지하거나 완화(33.1%) 해야한다는 응답이 나와 서로 엇갈리고 있었다.

다. 금연구역 필요시설 설치

금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규제에 대하여 인지도와 이해도 모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규제 필요성은 집행공무원(80%)과 시설관리자(91.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규제 준수적절성 역시 대체로 적절한 편이라고 집행공무원의 52.9%, 시설관리자의 56.8%가 응답하였다.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항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집행공무원 95.7%, 시설관리자 93.2% 모두 과반수가 넘는 높은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금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규제 준수 항목에서는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세부적인 사항인 환기시설의 설치와 칸막이 설비에 대하여는 잘 지키지 않음이 나타났고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규제를 집행공무원과 시설관리자의 77.1%, 64.9%가 준수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흡연구역 필요시설인 스티커만 집행공무원(94.3%), 시설관리자(91.2%)가 준수한다고 대답했을 뿐, 칸막이는 집행공무원(74.3%)이 준수하지 않았고, 환기시설 역시 집행공무원(52.9%), 시설관리자(79.7%) 모두 과반수만 약간 넘는 수준으로 준수하고 있어 흡연구역필요시설을 단지 스티커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규제 준수 감시 가능 여부는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집행공무원(77.1%)과 시설관리자(48.6%)가 응답하였고, 벌칙부과의 적절성은 집행공무원은 현재수준이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6%이고 시설관리자는 현재수준이나 완화해야한다는 것이 89.1%로 응답하여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표 4-3〉 흡연구역에 스티커, 칸막이, 환기시설 시설설치 결과 요약

조사 결과	총 평 및 대 책
- 규제인지 : 집행공무원 100.0% 시설관리자 97.3% - 규제필요 : 집행공무원 80.0% 시설관리자 91.9% - 건강기여 : 집행공무원 95.7% 시설관리자 93.2% - 준수적절성 : 집행공무원 60.0% 시설관리자 73.7% - 준 수 율 : 집행공무원 77.1% 시설관리자 64.9% - 준수감시가능 : 집행공무원 22.8% 시설관리자 51.4% - 벌칙부과(현재가 적당) : 집행공무원 50.0% 시설관리자 52.7%	- 건강에의 기여도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높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규제 준수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낮음. 준수율 또한 낮는데 특히 세 가지의 필요시설을 다 설치한 경우는 50% 정도로 매우 낮음. 그러나 현재의 집행력으로 규제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고 있음. - 규제의 필요성 및 국민건강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받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규제 유지 및 강화 필요. • 시설관리자들이 필요시설을 특히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모색 • 규제준수 감시 강화를 위한 행정력의 개편 • 기타 준수율을 저해하는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

라.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에 대해 집행공무원과 일반국민, 시설 관리자 대다수가 알고 있었으며, 금연구역에서 금연 의무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이 동의하였다. 규제 준수적절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집행공무원이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응답도 24.3%로 나타나 일선에서 규제하는 집행공무원들이 수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규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표 4-4〉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 결과 요약

조사 결과	총평 및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인지 : 집행공무원 100.0% 일반국민 86.3% 시설관리자 99.3% - 규제필요 : 집행공무원 98.6% 일반국민 96.0% 시설관리자 92.6% - 건강기여 : 집행공무원 97.1% 일반국민 96.2% 시설관리자 98.0% - 준수적절성 : 집행공무원 75.7% 일반국민 78.9% 시설관리자 80.4% - 준수율 : 집행공무원 51.4% 일반국민 63.3% 시설관리자 56.1% - 준수감시가능 : 집행공무원 17.1% 일반국민 42.9% 시설관리자 46.6% - 별척부과(일반국민) : 강화 38.5% 유지 50.4% 완화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도가 높고, 필요성, 건강기여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함. 규제 준수적절성, 준수율, 준수감시가능성에 대하여는 다른 세 가지의 규제에 비하여 가장 낮음. 일반국민은 현재의 과태료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하여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음. - 규제의 필요성 및 건강기여도를 인정받으므로 규제 유지 또는 강화 필요 · 일반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 · 행정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감시 강화 · 과태료의 인상 · 기타 준수율을 저해하는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

공공시설 금연구역에서 금연의무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매우 우세하였다. 공공시설에서 금연 의무에 대해 금연한다는 응답이 집행공무원, 일반국민, 시설관리자 모두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 규제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공공시설 금연구역에서 금연의무를 준수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는 집행공무원은 일반국민과 시설관리자에 비해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집행공무원의 감시가능성의 현실화를 맞추기 위하여 집행력 및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마. 피규제 집단 조사 결과

1) 일반국민에 대한 조사결과

일반국민 대상으로 규제의 인지도, 필요성, 규제 준수적절성, 국민건강 기여도를 Portfolio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되는 공공시설은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교통시설, 목욕장 이었다. 홍보를 통해서 규제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이 제고될 때, 규제에 대한 준수율이 상승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홍보 정책이 필요하다. 반면 학원과 대규모 점포는 규제의 필요성은 높았으나, 준수율은 낮아, 이 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줄일 수 있도록 단속이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흡연/금연구역 구분 규제와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규제의 분석결과, 후자의 경우 인지도, 필요성, 규제 준수적절성, 국민건강 기여도 등은 평균이상이나 준수율이 낮으므로 이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서 규제의 준수율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2) 시설관리자 대상 조사결과

절대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시설관리자 조사결과를 Portfolio 분석한 결과, 학원, 관광숙박업소, 목욕장의 규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낮은 준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규제 준수도를 높이기 위해서 ‘흡연/금연구역 구분 규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대규모 점포는 규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준수율은 낮아 이 시설에 대한 단속의 강화, 규제의 건강증진 효과 등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규제는 시설관리자가 이에 대한 규제 준수적절성이나 국민건강 기여도의 판단에서 평균 이하의 평가를 하였고, 이러한

낮은 평가가 낮은 준수율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규제가 준수하기에 적절하고 국민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공공시설의 흡연/금연구역 구분, 절대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한 준수율이 90% 정도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규제한 환기시설의 필요시설설치에서는 실천율이 50% 정도로 낮게 나타났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의 준수율은 50% 미만으로 4개의 규제 중 가장 낮다.

공공시설의 흡연/금연구역 구분, 절대금연구역의 지정, 흡연구역에 스티커, 칸막이, 환기시설의 필요시설설치는 시설관리자의 의무사항이며,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는 일반국민의 의무사항임을 감안 할 때, 시설관리자 보다는 일반국민의 규제준수율이 낮은 편이다. 준수율은 시설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목욕장, 관광숙박업소, 학원, 교통시설, 대규모점포(지하상가)에서의 규제 준수비율이 다른 시설에 비하여 낮았다.

4가지 규제는 규제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국민건강의 기여도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해당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는 것으로, 해당 규제를 존속시키고, 강화하여야 함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그러나 해당 규제의 준수율은 인지도, 필요성, 국민건강의 기여도 보다 낮는데, 이렇게 준수율이 낮은 원인으로 4가지 규제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해당 규제의 준수의 어려움(규제 준수 적절성)과, 현재의 행정력으로 규제 준수 감시가 불가능함(규제준수감시가능)을 꼽을 수 있음. 특히 현재의 행정력으로 규제준수 감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국민, 시설관리자, 집행공무원에게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제준수율이 낮은 관광숙박업소, 목욕장, 학원, 대규모점포(지하상가), 교통관련시설의 공공시설의 흡연/금연구역 구분과 절대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규제인지도), 환기시설의 필요시설설치에 대한 낮은 인지도(규제인지도)와 환기시설의 필요시설설치가 국민건강에 대한 기여도(국민건강기여도)가 낮다는 사항이다.

바. 정책 제언

공공시설의 흡연/금연구역 구분, 절대금연구역의 지정, 흡연구역에 스티커, 칸막이, 환기시설의 필요시설설치와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는 간접흡연의 방지를 위하여 지속, 강화되어야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규제별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시설의 흡연/금연구역 구분 규제는 4가지 규제 중 비교적 준수율이 높은 규제이다. 그러나 시설별로 규제준수율이 낮은 시설인 목욕장, 관광숙박업소 등 상대적으로 규제준수율이 낮은 시설에 대한 해당규제의 존재여부와 필요성, 국민건강의 기여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력의 강화를 통한 준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절대금연구역의 지정 규제는 행정력의 강화를 통한 준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목욕장, 관광숙박업소 등 상대적으로 규제준수율이 낮은 시설에 대한 해당규제의 존재여부와 필요성, 국민건강의 기여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셋째,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규제에 대하여는 해당규제의 존재여부와 필요성, 국민건강의 기여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관리자들이 필요시설을 특히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또는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규제준수 감시 강화를 위한 행정력의 개편이 필요하다.

넷째,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는 일반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시를 하도록 행정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3가지 지원책이 필요하다.

첫째,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조직, 인원, 재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위반시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하여도 무방하다.

둘째, 전반적인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홍

보는 일반국민, 시설관리자, 집행공무원의 순으로 필요하며, 내용별로는 흡연/금연구역 준수율이 낮은 목욕장, 관광숙박업소, 학원, 교통시설, 대규모점포(지하상가)에서의 금연/흡연구역의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흡연구역에서의 필요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가장 준수율이 낮은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시설관리자들이 흡연구역에 스티커, 칸막이, 환기시설 특히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한중·박태규·지선하·강혜영·남정모,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예방의 학회지』, 제34권 제3호, 2001.8, pp.183~190.
- 김한중,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및 흡연율 감소전략 개발』, 연세대학교·보건복지부, 2000.
- 박현아, 「금연구역, 흡연구역의 선포가 남자직원들의 흡연양상과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백남원 등, 『멀티문화방(PC방)의 흡연으로 인한 공기오염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한국인사연초연구원, 2001.
- 백남원 등, 『서울시내 주요 공공시설의 흡연환경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1.
- 백남원, 『흡연노출 평가를 이용한 금연정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2.
- 정애숙·이규식·박종구, 「각국의 담배규제정책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 『건강증진학회지』, 제3권 제2호, 2001, pp.160~183.
- 조성일, 『담배연기의 유해성분 및 흡연에 의한 건강영향 평가』, 보건복지부, 2002.
- 지선하 외, *Husbans' Smoking and Lung Cancer*, March 31, 1999, in press
- 한국소비자 연맹, 『공중시설의 금연흡연구역 실태 조사』, 1999.
- 황보빈, 「간접흡연과 건강」,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 2002 “간접흡연과 건강” 국립암센터 1-8

- Hammond S. K., "Exposure of US Workers to Environmental Tobacco Smoke", *Environ Health Perspecti* 107 Supplement-2, 1999.
- Jee S. H., Ohrr H. C., Kim I. S., "Effects of husbands' smoking on the incidence of lung cancer in Korean women", *International J Epidemiology* 1999 28 pp.824~828.
- NRC, *National Research of Council Environmental tobacco Smoke*, Meeting Exposures and Assessing Health Effects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1986.
- Phillips K., M. C. Bently, D. A. Howard, and G. Alvan, "Assessment of Environmental tobacco Smoke and Respirable suspended Particle Exposures for Nonsmokers in Prague Using personal Monitoring",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71:379~390, 1998.
- The World Bank, *Tobacco control can prevent millions of death worldwide new release* No.99/2189/s. Geneva, 1999. May 18.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Secondhand Smoker, What You Can Do about Secondhand Smoke as parents, Decision Makers and Building Occupants*, EPA-402-F-93-004, July 1993.
- US EPA, *Fact Sheet 'Respiratory Health Effects of Passive Smoking'* EPA-43-F-93-003, 1993.

부 록

1. 규제별 설문내용 / 89
2. 설문지 / 94
3. 관련법 / 122

1. 규제별 설문내용

가. 공공시설에서의 금연/흡연구역 구분

- 규제 인지도: 1-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규제 이해도: 1-2. ○○님은 어떤 건물에 어떻게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규제 필요성: 2-1. 다음은 반드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구분해야 하는 건물입니다. ○○님은 다음 각 건물에 금연/흡연구역이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규제 준수 적절성: 2-2. ○○님이 생각하시기에 공공시설에서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국민건강 기여도: 2-3. ○○님이 생각하시기에 공공시설에서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이 ‘국민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규제준수율: 3-1.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음은 반드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구분해야 하는 공공 건물입니다. ○○님이 보시기에 요즈음 각 건물에 금연/흡연 구역의 구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규제 준수감시가능여부: 3-2. ○○님이 판단하시기에 앞에서 말한 공공건물의 금연/흡연구역의 실시여부를 현재의 집행력으로 어느 정도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벌칙부과의 적절성: 3-3.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건물에서 금연구역·흡연구역의 구분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의 벌칙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완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나. 공공시설에서의 절대 금연구역 지정

- 규제 인지도: 1-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규제 이해도: 1-2. ○○님은 어떤 건물이 어느 부분을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 규제 필요성: 2-1. 다음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님은 각 건물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지역이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규제 준수 적절성: 2-2. ○○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의 질문에서와 같이 공공시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국민건강 기여도: 2-3. ○○님이 생각하시기에 공공시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규제 준수율: 3-1. 이미 말씀드린대로 다음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님이 보시기에 요즈음 각 건물에서 이러한 금연구역이 잘 지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규제지정여부: 3-1-1 ○○님이 관리하시는 건물 (위의 표에서 어디인지 확인)의 금연구역 장소(위의 표에서 확인)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 규제 준수감시가능여부: 3-2. ○○님이 판단하시기에 앞에서 말한 공공건물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이 반드시 실행되고 있는지를 현재의 집행력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벌칙부과의 적절성: 3-3.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건물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의 지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의 벌칙수준을 강화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완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다.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 규제 인지도: 1-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구역에는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규제 이해도: 1-2.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흡연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규제 필요성: 2-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 흡연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규제 준수 적절성: 2-2.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 흡연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하도록 규제한 것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국민건강 기여도: 2-3.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 금연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하도록 규제한 것이 ‘국민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규제 준수율: 3-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 흡연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하도록 규제한 것이 모든 흡연구역에서 시설규제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3-1-1. ○○님께서 관리하시는 건물 흡연구역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셨습니다가?

3-1-2. 흡연구역을 금연구역과 인접된 장소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셨습니까?

3-1-3. 흡연구역에는 환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하셨습니까?

- 규제 준수감시가능여부: 3-2. ○○님이 판단하시기에 흡연구역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였는지를 현재의 집행력으로 어느 정도 단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벌칙부과의 적절성: 3-3. 흡연구역에 필요한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의 벌칙수준을 강화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완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 공공시설의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의무

- 규제 인지도: 1-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규제 필요성: 2-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규제 준수 적절성: 2-2. ○○님이 생각하기에 앞의 질문에서와 같이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혹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 국민건강 기여도: 2-3. ○○님이 생각하시기에 공공시설에서의 금연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규제 준수율: 3-1. ○○님이 생각하시기에 공공시설의 금연 구역에서 사람들이 반드시 금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규제 준수감시가능여부: 3-2. ○○님이 판단하시기에 공공시설의 금연 구역

에서 사람들이 반드시 금연을 하고 있는지를 현재의 집행력으로 충분히 단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벌칙부과의 적절성: 3-3. 현재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실제로는 2~3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의 벌칙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혹은 완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시설관리자>

- 규제준수율: 3-1-1 ○○님이 관리하시는 건물의 금연구역에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금연을 하고 있습니까?

2. 설문지

부 록 : 설 문 지

<규제순응도 조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규제>- 일반국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지역코드	id		조사원 코드

날 짜 :

전화번호 :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무총리실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근무하는 _____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금연구역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응답은 금연구역 설치에 대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R1. ○○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R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R3. 지역(도시이름) _____

<규제 1> 흡연 및 금연구역 구분

1-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르고 있다

1-2. ○○님은 어떤 건물에 어떻게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국민건강증진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1999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물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야 하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예’ 라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예	아니오
1. 대형건물		
2. 공연장		
3. 학원		
4. 대규모 점포		
5. 관광숙박업소		
6. 학교		
7. 실내체육시설		
8. 의료기관		
9. 사회복지시설		
10. 교통시설관련		
11. 목욕장		

2-1. 다음은 반드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구분해야하는 건물입니다. ○○님은 각 건물에 흡연/금연구역이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예	아니오
1. 대형건물		
2. 공연장		
3. 학원		
4. 대규모 점포		
5. 관광숙박업소		
6. 학교		
7. 실내체육시설		
8. 의료기관		
9. 사회복지시설		
10. 교통시설관련		
11. 목욕장		

2-2. ○○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 ③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2-3. ○○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이 '국민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 ③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1. 이미 말씀 드린대로 다음은 반드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구분해야하는 공중 이용시설입니다. ○○님이 보시기에 요즈음 다음 건물에서 금연/흡연 구역의 구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예	아니오
1. 대형건물		
2. 공연장		
3. 학원		
4. 대규모 점포		
5. 관광숙박업소		
6. 학교		
7. 실내체육시설		
8. 의료기관		
9. 사회복지시설		
10. 교통시설관련		
11. 목욕장		

3-2. ○○님이 판단하시기에 앞에서 말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흡연구역의 실시여부를 현재의 집행력으로 어느 정도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①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 ②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
- ③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

3-3.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금연구역·흡연구역의 구분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의 벌칙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완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강화해야 한다
- ② 현재수준이면 적당하다
- ③ 완화해야 한다

<규제 4>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 1-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 2-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필요하다) ② 아니다 (필요하지 않다)
- 2-2. ○○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의 질문에서와 같이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적절하다 ②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③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 2-3. ○○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금연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3-1. ○○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 구역에서 사람들이 반드시 금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3-2. ○○님이 판단하시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 구역에서 사람들이 반드시 금연을 하고 있는지를 현재의 집행력으로 어느 정도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①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②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
 ③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

3-3. 현재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2~3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의 벌칙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혹은 완 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강화해야 한다 ② 현재수준이면 적당하다
③ 완화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R3. ○○님은 현재 흡연을 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R4. ○○님께서 현재 종사하고 계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노동근로직 ④ 자영업
⑤ 판매/서비스직 ⑥ 농어업
⑦ 무직 ⑧ 주부
⑨ 학생 ⑩ 기타

R5. ○○님께서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이상

R6. ○○님 가족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⑥ 300만원 이상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제순응도 조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규제>

집행공무원

지역코드

id

조사원 코드

보건소 이름: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현실성은 있으나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없는 규제의 경우에는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님의 응답은 통계목적 위에 어떤 용도로도 절대 사용되지 않사오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3: 지역코드 _____ (도시 이름: _____)

<규제 1> 흡연/금연구역구분

1-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1-2. ○○님은 어떤 건물에 어떻게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국민건강증진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1999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물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야 하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예’ 라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예	아니오
1. 대형건물		
2. 공연장		
3. 학원		
4. 대규모 점포		
5. 관광숙박업소		
6. 학교		
7. 실내체육시설		
8. 의료기관		
9. 사회복지시설		
10. 교통시설관련		
11. 목욕장		

2-1. 다음은 반드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구분해야하는 건물입니다. ○○님은 다음 각 건물에 흡연/금연구역이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예	아니오
1. 대형건물		
2. 공연장		
3. 학원		
4. 대규모 점포		
5. 관광숙박업소		
6. 학교		
7. 실내체육시설		
8. 의료기관		
9. 사회복지시설		
10. 교통시설관련		
11. 목욕장		

2-2. ○○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 ③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2-3. ○○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이 '국민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 ③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1. 이미 말씀드린대로 다음은 반드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구분해야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님이 보시기에 요즈음 각 건물에 금연/흡연구역의 구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예	아니오
1. 대형건물		
2. 공연장		
3. 학원		
4. 대규모 점포		
5. 관광숙박업소		
6. 학교		
7. 실내체육시설		
8. 의료기관		
9. 사회복지시설		
10. 교통시설관련		
11. 목욕장		

3-2. ○○님이 판단하시기에 앞에서 말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흡연구역의 실시여부를 현재의 집행력으로 어느 정도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①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 ②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
- ③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

3-3.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금연구역·흡연구역의 구분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의 벌칙수준을 강화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완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강화해야 한다
- ② 현재수준이면 적당하다
- ③ 완화해야 한다

<규제 2> 절대 금연구역 지정

1-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1-2. ○○님은 어떤 건물이 어느 부분을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1999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일부를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예’ 라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금연구역	예	아니오
1. 대형건물	승강기		
2. 공연장	승강기		
3. 학원	승강기		
4.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중 상품판매장소/승강기		
5. 관광숙박업소	승강기		
6. 학교	승강기		
7. 실내체육시설	승강기		
8. 의료기관	대기실, 진료실, 입원실 등/ 승강기		
9.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곳/ 승강기		
10. 교통시설관련	차량안, 지하철 및 지하철 역사안/승강기		
11. 목욕장	승강기		

2-1. 다음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님은 각 건물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지역이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	금연구역	예	아니오
1. 대형건물	승강기		
2. 공연장	승강기		
3. 학원	승강기		
4.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중 상품판매장소/승강기		
5. 관광숙박업소	승강기		
6. 학교	승강기		
7. 실내체육시설	승강기		
8. 의료기관	대기실, 진료실, 입원실 등/ 승강기		
9.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곳/ 승강기		
10. 교통시설관련	차량안, 지하철 및 지하철 역사안/승강기		
11. 목욕장	승강기		

2-2. ○○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의 질문에서와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③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2-3. ○○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1. 이미 말씀드린대로 다음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님이 보시기에 요즈음 각 건물에서 이러한 금연구역이 잘 지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	금연구역	예	아니오
1. 대형건물	승강기		
2. 공연장	승강기		
3. 학원	승강기		
4.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중 상품판매장소/승강기		
5. 관광숙박업소	승강기		
6. 학교	승강기		
7. 실내체육시설	승강기		
8. 의료기관	대기실, 진료실, 입원실 등/ 승강기		
9.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곳 승강기		
10. 교통시설관련	차량안, 지하철 및 지하철 역사안/승강기		
11. 목욕장	승강기		

3-2. ○○님이 판단하시기에 앞에서 말한 공중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이 반드시 실행되고 있는지를 현재의 집행력으로 어느 정도 단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①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 ②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
- ③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

3-3.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의 지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의 벌칙수준을 강화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완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강화해야 한다 ② 현재수준이면 적당하다
- ③ 완화해야 한다

<규제 3>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1-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구역에는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2.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흡연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 흡연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2.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 흡연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하도록 규제한 것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③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2-3.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 흡연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하도록 규제한 것이 ‘국민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 흡연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하도록 규제한 것이 모든 흡연구역에서 시설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1-1. 구체적으로 건물 흡연구역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1-2. 칸막이 설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1-3. 흡연구역에는 환기에 필요한 시설 설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2. ○○님이 판단하시기에 흡연구역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였는지를 현재의 집행력으로 어느 정도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①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②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
 ③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

3-3. 흡연구역에 필요한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의 벌칙수준을 강화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완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강화해야 한다 ② 현재수준이면 적당하다
 ③ 완화해야 한다

<규제 4>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 1-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 2-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2-2. ○○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의 질문에서와 같이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적절하다 ②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③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 2-3. ○○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금연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3-1. ○○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 구역에서 사람들이 반드시 금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2. ○○님이 판단하시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 구역에서 사람들이 반드시 금연을 하고 있는지를 현재의 집행력으로 어느 정도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①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 ②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
- ③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

*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R1. ○○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R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 ② 여

R4. ○○님은 현재 흡연을 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제순응도 조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규제>-피규제집단(시설 관리자)

--	--	--	--	--	--	--	--

지역코드

id

조사원 코드

전화번호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현실성은 있으나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없는 규제의 경우에는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님의 응답은 통계목적 위에 어떤 용도로도 절대 사용되지 않사오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R3: 지역코드 _____ (도시이름)

시설이름: _____

R7. 시설유형

01. 대형건물 02. 공연장 03. 학원 04. 대규모 점포 05. 관광숙박업소
 06. 학교 07. 실내체육시설 08. 의료기관 09. 사회복지시설
 10. 교통시설관련 11. 목욕장

<규제 1> 흡연/금연구역구분

1-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르고 있다

1-2. ○○님은 어떤 건물에 어떻게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국민건강증진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1999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물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야 하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예’ 라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예	아니오
1. 대형건물		
2. 공연장		
3. 학원		
4. 대규모 점포		
5. 관광숙박업소		
6. 학교		
7. 실내체육시설		
8. 의료기관		
9. 사회복지시설		
10. 교통시설관련		
11. 목욕장		

2-1. 다음은 반드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구분해야하는 건물입니다. ○○님은 각 건물에 흡연/금연구역이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예	아니오
1. 대형건물		
2. 공연장		
3. 학원		
4. 대규모 점포		
5. 관광숙박업소		
6. 학교		
7. 실내체육시설		
8. 의료기관		
9. 사회복지시설		
10. 교통시설관련		
11. 목욕장		

2-2. ○○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 ③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2-3. ○○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이 '국민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 ③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1. 이미 말씀드린대로 다음은 반드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구분해야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님이 보시기에 요즈음 각 건물에 금연/흡연 구역의 구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예	아니오
1. 대형건물		
2. 공연장		
3. 학원		
4. 대규모 점포		
5. 관광숙박업소		
6. 학교		
7. 실내체육시설		
8. 의료기관		
9. 사회복지시설		
10. 교통시설관련		
11. 목욕장		

3-1-1 ○○님이 관리하시는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2. ○○님이 판단하시기에 앞에서 말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흡연구역의 실시여부를 현재의 집행력으로 어느 정도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①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②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
 ③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

3-3.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금연구역·흡연구역의 구분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의 벌칙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완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강화해야 한다 ② 현재수준이면 적당하다
 ③ 완화해야 한다

<규제 2> 절대 금연구역 지정

1-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1-2. ○○님은 어떤 건물이 어느 부분을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1999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일부를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예’ 라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금연구역	예	아니오
1. 대형건물	승강기		
2. 공연장	승강기		
3. 학원	승강기		
4.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중 상품판매장소/승강기		
5. 관광숙박업소	승강기		
6. 학교	승강기		
7. 실내체육시설	승강기		
8. 의료기관	대기실, 진료실, 입원실 등/ 승강기		
9.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곳/ 승강기		
10. 교통시설관련	차량안, 지하철 및 지하철 역사안/승강기		
11. 목욕장	승강기		

2-1. 다음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님은 각 건물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지역이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	금연구역	예	아니오
1. 대형건물	승강기		
2. 공연장	승강기		
3. 학원	승강기		
4.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중 상품판매장소/승강기		
5. 관광숙박업소	승강기		
6. 학교	승강기		
7. 실내체육시설	승강기		
8. 의료기관	대기실, 진료실, 입원실 등/ 승강기		
9.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곳/ 승강기		
10. 교통시설관련	차량안, 지하철 및 지하철 역사안/승강기		
11. 목욕장	승강기		

2-2. ○○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의 질문에서와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준수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③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2-3. ○○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1. 이미 말씀드린대로 다음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님이 보시기에 요즈음 각 건물에서 이러한 금연구역이 잘 지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	금연구역	예	아니오
1. 대형건물	승강기		
2. 공연장	승강기		
3. 학원	승강기		
4.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중 상품판매장소/승강기		
5. 관광숙박업소	승강기		
6. 학교	승강기		
7. 실내체육시설	승강기		
8. 의료기관	대기실, 진료실, 입원실 등/ 승강기		
9.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곳/ 승강기		
10. 교통시설관련	차량안, 지하철 및 지하철 역사안/승강기		
11. 목욕장	승강기		

3-1-1 ○○님이 관리하시는 건물 (위의 표에서 어디인지 확인)의 금연구역 장소인 (위의 표에서 확인)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2. ○○님이 판단하시기에 앞에서 말한 공중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이 반드시 실행되고 있는지를 현재의 집행력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①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②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
 ③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
 ④ 완화해야 한다

3-3.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공중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의 지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의 벌칙수준을 강화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완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강화해야 한다 ② 현재수준이면 적당하다

<규제 3> 흡연구역의 필요시설 설치

1-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구역에는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2.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흡연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 흡연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2.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 흡연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하도록 규제한 것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③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2-3.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 흡연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하도록 규제한 것이 ‘국민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 흡연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하도록 규제한 것이 모든 흡연구역에서 시설규제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1-1. ○○님께서 관리하시는 건물 흡연구역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1-2. 흡연구역을 금연구역과 인접된 장소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1-3. 흡연구역에는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2. ○○님이 판단하시기에 흡연구역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였는지를 현재의 집행력으로 어느 정도 단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①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②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
③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

3-3. 흡연구역에 필요한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의 벌칙수준을 강화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완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강화해야 한다 ② 현재수준이면 적당하다
③ 완화해야 한다

<규제 4>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의무

1-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2-1. ○○님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2. ○○님이 생각하기에 앞의 질문에서와 같이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혹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③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적절하지 않다

2-3. ○○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금연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1. ○○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 구역에서 사람들이 반드시 금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1-1 ○○님이 관리하시는 건물의 금연구역에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금연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2. ○○님이 판단하시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 구역에서 사람들이 반드시 금연을 하고 있는지를 현재의 집행력으로 충분히 단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①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 ②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
- ③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

***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R1. ○○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R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 ② 여

R4. ○○님은 현재 흡연을 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관련법

국민건강증진법 9조 ④항 ⑤항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4.7, 2002.1.19>
-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삭제<1999.2.5>
- 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19>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6조, 7조

제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9.10.28>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 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舎)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버스정류장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제7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지정 등)

-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호의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2. 제6조제8호의 의료기관중 환자의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진료를 위한 대기실을 포함한다)
 3. 제6조제9호의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다) 중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설
 4. 제6조제10호의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국내선 항공기, 철도의 차량내부, 도시철도의 지하역사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승객 또는 보행자에게 제공되는 교통관련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한한다)
 5.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제1항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시설 내에서 금연하도록 권장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34조 2, 3

제3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2002.1.19>

-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2.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 1.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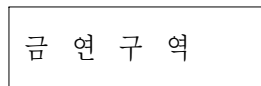
별표3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시설기준(제7조제1항 및 제2항관련)

1. 표시기준

가. 금연구역

(1) 금연구역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표 시 판



(예 시)

(나) 스티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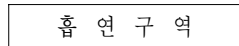
[그림 생략]

- (2) 표시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 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 (3) 시설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 (4)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5)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6) 스티커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흡연구역

- (1) 흡연구역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표 시 판



(예 시)

- (2) 표시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그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 (3) 표시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4) 표시판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시설기준

- 가.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수에 비례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고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흡연구역을 금연구역과 인접된 장소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흡연을 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흡연구역에는 흡연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아니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54.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범칙행위 및 범칙 금액표 [별표]<개정 1995·4·1, 1996·8·8>

해당 법조문	범칙행위	금액
금연장소 에서의 흡연	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지하철 역구내, 버스·기차·전동차·항공기·선박 등 대중교통수단, 병원 등 의료시설, 석유·가스·화약류 등 위험물 저장·판매시설 또는 승강기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30,000원
	나.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역대합실, 버스터미널, 실내체육관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20,000원